

해외연구관 지정과제
제2014-2호



각 국의 투 · 개표소 운영실태

2014. 5.

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

- 「각 국의 투개표소 운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6개국 연구관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취합하였음.
- 본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관 개인의 의견 또는 견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둠.

목 차

□ 국가별 제도개요	1
------------------	---

□ 각 국의 투·개·표·소 운영실태

1. 미국	7
2. 영국	26
3. 프랑스	48
4. 독일	67
5. 일본	91
6. 호주	105

국가별 제도개요

1.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1) 투표소 운영

- 미국은 각 주의 법률에서 투표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투표소의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투표소와 유권자 거주지 간의 거리, 예상투표율, 투표소 수용인원 및 주차공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거에 투표소로 활용되었던 장소를 투표소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미국장애인법(the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따라 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위해 투표소 진입통로의 경사, 복도의 폭, 장애인용 밴을 위한 공간 등 주차장에 갖추어야 할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음.

(2) 투표용지 작성 및 투표장비

- 투표용지 기호가 상위인 후보자가 유리하다는 일명 ‘투표용지 기호효과(the ballot order effects)’를 억제하기 위하여 12개주에서 후보자의 순서를 무작위적으로 정한 후 투표구별로 순환배열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기타 주에서는 후보자 성명의 알파벳순 배정방식 등이 활용되고 있음.
- 가장 널리 쓰이는 투표방식은 ‘투표용지 광학스캔 시스템(Optical Scan Paper Ballot System)’으로 투표용지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기입하고 이를 스캔하여 전자장치에 기록하는 방식임.

(3) 투·개표의 공정성 확보방안

- 개표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기 사용시 득표기록과 별도로 투표기록을 계산하여 비교하는 감사시스템을 22개 주에서 운영하고 있음.

2. 영국(United Kingdom)

(1) 투표소 운영

- 「선거등록 및 관리법 2013 (Electoral Registration and Administration Act 2013)」은 법이 정한 16개월의 시한 내에 지난 선거의 투표소로 활용된 건물의 내·외부 평가를 실시하고 차기 선거에 활용될 공공기관, 민간시설, 임시구조물 등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위해 투표감독관 도움 요청, 투표용지에 촉각장치 부착, 투표안내 도우미 등을 배치하고 있음.
- 투표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문제는 2010년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 부각되었는데 그 원인으로 투표장소의 협소성, 투표소별 유권자 과다 할당, 유권자수에 비해 투표소 직원수 부족 등이 지적되었음.

(2) 투표용지 작성

- 영국은 투표용지에 정당명 및 후보자명의 알파벳순으로 기재되며, 정당 기호제는 실시하지 않음. 이는 투표구별 순환배열 방식의 필요성이 상쇄되는 효과를 나타냄.

(3) 투·개표의 공정성 확보방안

- 선관위는 개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의혹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표매뉴얼을 제시하고 있음.
- 투표함 통제관을 지명하여 투표함 봉인부터 이송·반납의 전 과정을 책임지게 하고 있음.

3. 프랑스(French Republic)

(1) 투표소 운영

- 「선거법 제R40조」에 따라 투표소 설치의 지역사정과 선거인수를 감안하여 지역 도지사가 결정하고 있으며, 프랑스 내무부에서는 한 투표소당 선거인이 800~1,000명을 넘지않도록 권고하고 있음.
- 1975년부터 대리투표를 통해 장애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투표안내도우미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참관인이 장애인 보조 및 안내를 돕고 있음.

(2) 투표용지 작성 및 투표장비

- 프랑스에서는 투표용지에 표시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후보자의 투표용지가 배부되고 이 중 한 투표용지를 선택하여 봉투에 봉합한 후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됨.
- 부정선거의 의혹을 대폭 낮추기 위해 **투명 투표함**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동으로 투표수가 집계되고 유권자들의 표가 얼마나 쌓이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음.

(3) 개표소 운영

- 개표는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후 즉시 개시되며 투표소 직원의 감시 아래 개표참관인(scrutateur)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표참관인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투표소직원이 참가할 수 있음.
- 다수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 명부가 있는 경우 각 후보자의 개표참관인은 가능한 각 개표테이블에 동수로 배치되도록 하고 있음.
- 개표용 테이블은 선거인이 그 둘레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개표장은 참관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됨.

4. 독일(Federal Republic of Germany)

(1) 투표소 운영

- 투표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연방선거법 제31조 내지 제35조」 및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64조」에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 투표소는 가능한 각 자치단체 건물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고 설비하도록 하고 있음.

(2) 투표용지 작성 및 투표장비

-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재순위는 정당명부의 순위에 따르며, 정당소속이 아닌 경우 후보자 성명의 알파벳순으로 기재됨. 정당순위는 직전 선거의 정당 득표 순위에 따름.
- 투표함의 규격은 연방선거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투표함의 재질이나 재사용 여부 및 보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조달 및 설치 책임은 각 자치단체에 있음. 특별투표구나 이동투표구의 경우 시행령상의 규격보다 소형의 투표함이 사용될 수 있음.
- 투표함 내부가 비치는 투명 투표함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투표함의 비밀보장을 위해 시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개표소 운영

- 개표는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개표장비 사용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2500명 이하의 투표구에서 1차 개표를 진행하여 확정된 결과를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개표참관인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나, 투표구 선관위원장, 부위원장 및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2개조의 검표위원이 상호 감시하에 개표가 진행됨.

5. 일본(Japan)

(1) 투표소 운영

- 투표소는 학교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우선시되며 민간시설 이용 비율은 적은 편임. 다만 젊은 층의 투표참여를 위해 투표소의 비밀 및 질서유지가 확보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민간시설 및 역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고려되기도 함.
- 장애인 등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엘리베이터없는 2층이상의 투표소 지양, 투표소내 투표순서 및 동선 표시, 돋보기 및 노안용 비치, 기표대내 조명설치 및 후보자명 부착, 투표소가 멀리 있는 선거인을 위해 지자체에서 투표소까지 순환버스 운영 등이 권고되고 있음.

(2) 투표용지 작성 및 투표장비

- 일본은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직접 후보자의 이름이나 정당명을 적는 ‘자서식투표(自書式投票)’를 실시하고 있음.
- 지방선거의 경우 조례에 따라 기호식 투표의 채택도 가능하나 이때에는 투표용지에 인쇄된 후보자명에 동그라미를 하는 방식이 채택됨.
- 투표함은 공직선거법령에 견고한 재질로 이루어질 것과 자물쇠를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알루미늄 재질로 된 투표함이 많이 사용됨.

(3) 개표소 운영

- 최근 개표시 자동으로 후보자의 이름을 인식하여 분류하는 기계가 도입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작업에 의한 방법위주로 실시하는 실정임.
- 도쿄도의 경우 23구 및 대부분의 시에서 분류기계를 도입하였으나, 기계가 필체를 제대로 읽지 못해 수작업 개표로 진행되는 사례가 있음.

6. 호주(Australia)

(1) 투표소 운영

- 호주의 투표소는 기차역이 가까운 스포츠시설, 쇼핑센터와 같이 교통이 편리하고 거주지역과 가까운 커뮤니티 시설이나 우체국,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 건물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음.
- 투표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대기줄 감독관 (Queue Controller)과 질의응답 사무원(Inquiry Officers)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투표용지 작성 및 투표장비

- 호주는 추첨을 통해 정당 및 후보자의 투표용지 기재순서를 결정하고 있으며, 선호투표제 실시에 따라 선거인은 투표용지 후보자 이름 옆에 선호하는 숫자를 차례대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뒷모습이 다 보이는 개방형 기표대를 사용하며, 이는 투표책임관이 기표대 한 칸에 한명씩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3) 투·개표의 공정성 확보방안

- 호주는 투표시간이 종료되면 투표소를 폐쇄하고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를 시작하는 ‘투표소 개표’를 실시할 수 있음.
- 각 주마다 개표 때 전자장비를 활용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빠른 시간안에 개표결과를 알 수 있도록 지능문자인식(intelligent character recognition) 기술이 활용되고 있음.



미 국

미국 연구관 : 박천호

1. 투표소 운영 실태

(1) 관련 규정

○ 투표소는 다음의 설치요건을 충족하여야 함.¹⁾

- 투표소가 위치한 시설은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들에게 가깝게 위치하여야 함.
- 소유자가 선거일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함.
- 투표소로 선택된 시설이 연방 및 주에서 요구하는 접근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투표소로 사용되는 시설은 투표에 필요한 장비 및 투표자 확인을 위한 대기열을 포함한 투표자 확인에 필요한 장소 등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크기의 공간 혹은 복도를 갖추고 있어야 함.
- 시설 소유주는 투표소 종사자의 업무를 위해 선거일 전날 저녁에 해당 시설을 개방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으며, 선거일 이른 아침부터 투표 종료 시까지 시설을 개방하여야 함.
- 투표소로 사용되는 시설은 선거일에 투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함.
- 선거일의 투표예상자의 수에 근거한 출입 교통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1) The United States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lection Management Guidelines*.

(2) 투표소 선정 및 요건

- 투표소의 위치, 숫자, 투표 시간 등에 대해 각 주의 법률은 주의 선거 관계자가 투표소의 위치, 숫자, 투표소 운영시간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투표소의 위치와 관련하여,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교통량 밀집 지역, 대단위 주거지역, 그리고 대중교통 루트와 근접한 곳으로 선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도시 외의 지역의 경우, 지역 공동체에 잘 알려진 장소를 선택하되, 가능하다면 과거에도 투표소로 활용되었던 장소를 투표소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³⁾
- 투표소의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됨.
 - 주의 법률이 복수의 선거구를 하나의 투표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지의 여부. 예를 들어, 텍사스 주의 법률은 선거구 당 하나의 투표소를 선거구 내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⁴⁾
 - 투표 시설과 해당 시설에서 투표하는 유권자의 거주 지역과의 거리
 - 각 선거의 예상 투표율
 - 투표소로 사용되는 시설의 수용 인원 및 주차 공간

2) The United States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lection Management Guidelines*.

3) The United States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lection Management Guidelines*.

4) Texas Election Code, Section 43.001. One Polling Place In Each Precint.

○ 다음은 투표소 선정 관련 문서의 예시임(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카운티).⁵⁾



Sacramento County
Voter Registration and Elections
 7000 59th Street, Suite A, Sacramento CA 95823

Use of Your Facility as a Polling Place

Tuesday – March 27, 2007

An on-site survey of every facility used as a polling place is required. When this survey has been completed, the facility will be added to the polling place files as a possible site for a polling place.

The surveyor does not assign a facility as a polling place.
 The surveyor is locating possible polling places only.
 The election office will determine the exact site to be used as a polling place for each election.

If your facility is selected, a confirmation letter will be sent to you. *This letter must be signed by the owner or contact person and returned to the Elections Office prior to the site being assigned.*

The current fee paid for the use of a facility used as a polling place is \$50.00. It is assumed that public facilities will be used free of charge per California Elections Code.

The minimum space required for a polling place is 15 by 20 feet. One electrical outlet must also be available for use.

A polling place must meet all Handicapped Accessibility requirements.

The facility must be open and available to the precinct board from 6:00 am Election Day morning, until approximately 10:30 pm election night. Voting hours at the polling place is 7:00 am until 8:00 pm.

The polling place must be free of any activities that would conflict with the voting process.

The precinct officers will bring with them all supplies needed for conducting the election. All supplies brought by the precinct board will be removed when they leave election night.

You will be asked to provide an 8-foot table (or two smaller tables) with 6 chairs. If you cannot, please contact the election office, and arrangements will be made to have them delivered.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need further information, please call the Precinct Operations section at (916)875-6618.

5) The United States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lection Management Guidelines*.

투표소로서 편의시설 사용 요청

2007년 3월 27일 화요일

투표소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해당 조사가 끝나면, 당해 시설은 투표소 사용 가능 장소로 투표소 목록에 더해질 것입니다.

조사자는 동 시설을 투표소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자는 투표소로 사용 가능한 위치를 지정할 권한만 있습니다.

선거공무원이 각 선거의 투표소로 사용할 정확한 위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본인의 시설이 선정되었을 경우, 확인서한이 발송될 것입니다. 당 시설의 소유주나 계약자는 이 서한에 서명하고, 그 장소가 투표소로 지정되기 전에 선거위원회에게 재발송해야 합니다.

시설 사용료로 지불되는 비용은 50불입니다. 캘리포니아 선거 강령에 따라 무료로 사용되는 공공시설로 간주될 것입니다.

투표소로 사용될 수 있는 최소 면적은 폭 15피트에 길이는 20피트입니다. 한 개의 전기 콘센트도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투표소는 모든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당해 시설은 선거일 아침 6시부터 선거일 밤 약 10시30분까지, 선거구 위원들이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투표시간은 오전7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투표소는 투표과정에 필요한 모든 활동에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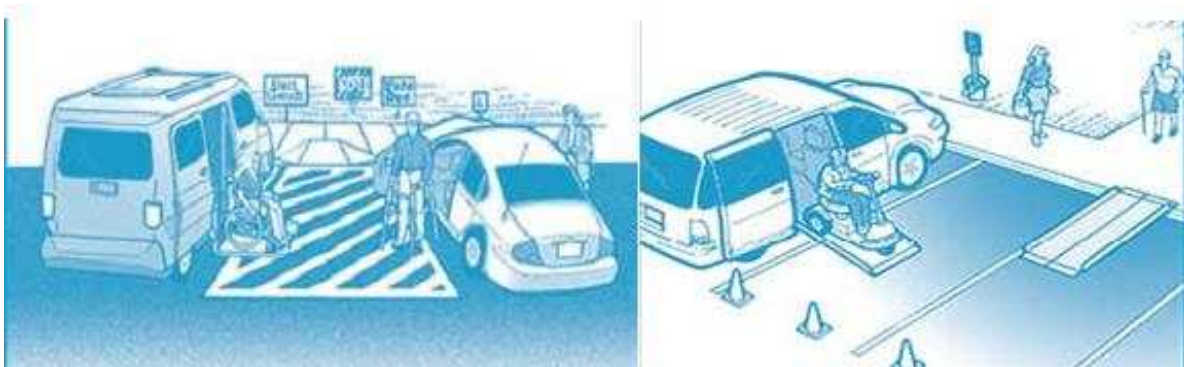
선거구 공무원들은 선거시행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모든 자재들은 선거일 밤 공무원들이 철수하면서 가져갈 것입니다.

당해 시설의 소유주나 계약자는, 8피트 높이의 탁자 1개와(또는 더 작은 2개의 탁자) 6개의 의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준비가 불가능 한 경우, 선거사무실로 연락하면 동 물품이 배송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선거구관리부(전화번호 916-875-6618)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한 요건

- 모든 투표소는 투표 장소로 진입하는 통로의 경사, 복도의 폭, 장애인용 밴을 위한 공간 등 주차장에 갖추어져야 할 요건, 입구의 넓이 등 「미국 장애인법(the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ADA)」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투표소를 선정하기 이전에 상기의 사항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통로의 경사는 4.76도 혹은 그 이하임.
- 각 투표소는 자동차를 이용해 투표소에 도착한 장애인들에게 투표소의 입구와 근접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해당 주차 공간은 장애인이 탑승한 차의 문을 완전히 열고 보조인의 도움에 따라 휠체어에 오를 수 있는 통로와 연결되어 있어야 함.



- 아래의 그림은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구비된 주차장의 예시와 장애인 투표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한 실제 투표소임.⁶⁾

6) The United States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lection Management Guidelines*.



(4) 투표소 종사자 모집, 자격 요건, 훈련, 수당 등

- 각 주의 법률은 주의 거주자가 투표소 종사자로 지원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조지아, 아이다호, 워싱턴, 위스콘신 주를 제외한 나머지 46개 주의 법률은 등록된 유권자들에 한하여 투표소 종사자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워싱턴 주를 제외한 49개 주의 경우 15~18세 이상의 주민들에 한하여 투표소 종사자로 임명하도록 연령을 제한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 컬럼비아 특별구, 플로리다, 조지아, 미시시피, 오리건,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투표소 종사자들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거나 정당에 소속된 지원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애리조나, 인디애나, 메인,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등의 주에서는 정당에 소속된 주민들만이 특정 직책에 임명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앨라배마, 알래스카, 아칸소, 코네티컷, 아이다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주리, 네브라스카, 네바다 등의 주에서는 정당에 소속된 지원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의 주에서는 투표소 종사자들의 소속 정당 비율이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투표소 종사자의 소속 정당이 고려됨.
- 상기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투표소 종사자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당원이어야 함.
- 각 주의 투표소 종사자 임명 과정 및 종사자의 교육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⁷⁾

주	투표소 종사자 임명 과정	교육의 필수 여부
앨라배마	정당들이 선거 45일 전까지 후보자 명단을 제출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선거 15일에서 20일 전 사이에 이들을 임명함.	필수적임(투표기가 사용되는 경우).

7) The United States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2007. "Compendium of State Poll Worker Requirements."

알래스카	정당 위원회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4월 15일까지 후보자 명단을 제출함.	필수적이지 않음. 투표소 종사자로서 임무 수행에 대한 선서를 해야함.
애리조나	정당에서 선거 실시 90일전까지 후보자를 추천하면, 감리위원회에서 정당의 후보자와 그 외 종사자들을 임명함.	필수적임.
아칸소	카운티 위원회의 정당 위원들이 선거 20일 이전까지 후보자들을 지명해야 함.	일부 선거 관계자들에 한하여 필수적임.
캘리포니아	각 정당이 선거 90일 이전까지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고, 선거위원회에서 이들을 임명함.	카운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됨.
콜로라도	정당 간부회의 10일 이후에 제출된 정당의 후보자 명단에 따라 카운티에서 임명함.	필수적임.
코네티컷	주에서 임명함.	필수적임.
델라웨어	2월 1일까지 제출된 정당의 후보자들 가운데 주의 선거 담당자가 임명함. 카운티 정부는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음.	필수적임.
컬럼비아 특별구	해당 정보 없음	필수적임.
플로리다	카운티의 선거 감독관이 선거 위원회 위원들을 선거일 20일 이전까지 임명함.	필수적임.
조지아	선거감독관이 임명함.	보궐선거를 제외한 정거 선거에 대하여 필수적임.
하와이	선거담당 최고책임자가 선거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제출된 정당의 후보자들을 임명함.	신규 임명자들에 한하여 필수적임.
아이다호	각 선거구의 위원이 임명하며, 숫자가 부족할 경우 카운티의 서기가 임명함.	필수적임.

일리노이	카운티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연례회의 10일 전에 제출된 정당의 후보자들을 임명함.	필수적임.
인디애나	카운티 위원회에서 선거일 21일 이전에 제출된 정당의 후보자들을 임명함.	투표소 조사관에 한하여 필수적이며, 카운티에 따라 여타의 종사자에 대해 교육을 부과할 수 있음.
아이오와	선거위원장이 선거일로부터 20일 이전에 제출된 정당의 후보자들을 임명함.	일부의 선거 관계자들에 대하여 필수적임.
캔자스	카운티의 선거 담당자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제출된 정당의 후보자들을 임명함.	각 카운티에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교육이 필수적인지의 여부는 불명확).
켄터키	카운티의 위원회에서 각 연도의 3월 15일 이전에 제출된 정당의 후보자들을 임명함.	질병 혹은 기타의 긴급 상황을 제외하면 필수적임.
루이지애나	각 지구의 위원회에서 선거일로부터 20일 혹은 29일 이전에 인증된 후보자들을 선택하여 임명함.	필수적임.
메인	지방 자치 당국에서 선거 담당자를 임명하며, 이 담당자가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4월 1일까지 제출된 후보자들을 임명함.	주 국무장관이 격년제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도록 함.
메릴랜드	선거 담당자가 임명하며, 지역 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함. 민주당 및 공화당에 소속된 투표소 관련 종사자의 숫자가 동일해야 함.	필수적임.
매사추세츠	해당 연도 6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정당의 후보자들은 선거 위원회 혹은 선거 담당자가 임명함.	필수적이지 않음.
미시간	선거위원회에서 5월 15일까지 제출된 정당의 후보자들을 임명함. 또한, 각 후보자들은 개별적으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함.	필수적임.

미네소타	카운티의 감사관이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7월 1일까지 제출된 정당의 후보자들을 임명함.	필수적임.
미시시피	카운티에서 임명함.	필수적임.
미주리	선거 당국 혹은 위원회에서 양대 정당의 후보자 및 정당에 소속되지 않거나 군소 정당의 후보자들을 임명함.	필수적임.
몬태나	카운티에서 짝수 해의 예비 선거 45일 이전에 제출된 정당의 후보자들을 임명함.	필수적임.
네브라스카	선거 위원장 혹은 카운티의 담당자가 임명함.	필수적임.
네바다	카운티에서 선거일 60일 이전에 제출된 정당의 후보자들을 임명함.	의장 및 여타 투표와 관련된 기계를 다루는 종사자들에게 필수적임.
뉴햄프셔	(선출된) 중재자 및 각 지역의 담당자들이 임명하며, 각 정당들이 조사관들을 임명함.	필수적이지 않음.
뉴저지	카운티의 위원회에서 정당들과 협의 하에 개별적으로 제출된 지원서를 심사하여 임명함.	격년제로 부과되는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뉴멕시코	임명 30일 이전에 제출된 정당의 후보자들을 카운티에서 임명함. 또한,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후보자들 가운데에서도 임명함.	필수적임.
뉴욕	해당 연도 5월 1일까지 제출된 정당의 후보자들을 카운티에서 임명함.	3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노스캐롤라이나	8월 셋째 주 화요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제출된 정당의 후보자를 카운티 위원회에서 임명함.	필수적임.
노스다코타	지역구의 정당 의장들이 선거일 21일 이전에 선거 심판관 및 담당자들을 임명함.	필수적임.

오하이오	카운티 위원회에서 해당 연도 9월 15일에 과반 득표에 의해 임명함.	필수적임.
오클라호마	카운티 선거 위원회에서 75년 6월 15일 이후 4년마다 제출되는 정당의 후보자들을 임명함.	격년제로 실시되는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오리건	카운티의 선거 담당자가 임명하며, 정당은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필수적임.
펜실베이니아	심판관 및 조사관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조사관은 담당자 및 기계 운영자를 임명함.	심판관, 조사관, 기계 운영자는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로드아일랜드	관할 구역에 따라 다름.	필수적임.
사우스캐롤라이나	선거 위원장이 임명함.	필수적임.
사우스다코타	선거일로부터 45일 이전에 제출된 정당의 후보자들을 카운티의 감사관이 임명함.	필수적이지 않음.
테네시	임명 30일 이전에 제출된 정당의 후보자들을 카운티의 위원회에서 임명함.	필수적임. 그러나 조사관을 제외한 다른 직책에 대해서는 면제되는 경우도 있음.
텍사스	7월에 제출된 정당의 후보자들을 카운티에서 심판관으로 임명함.	필수적이지 않음.
유타	작수해의 4월 1일까지 제출된 정당의 후보자들을 카운티에서 임명함.	교육과정을 개발 중임.
버몬트	일반적으로 서기관이 수석 책임자가 되며, 행정 당국의 위원회에서 보조원들을 임명함.	필수적임.
버지니아	해당 연도의 2월 1일로부터 10일 전에 제출된 정당의 후보자들을 선거 위원회에서 임명함.	필수적임.
워싱턴	카운티의 감사관이 6월 1일까지 제출된 정당의 후보자들을 임명함.	필수적이지만, 유경험자에 한해서 면제가 가능함.

웨스트버지니아	선거일로부터 56일 전까지 정당에서 제출한 두 명의 후보자들을 카운티에서 임명하며, 이후 한 명을 추가로 임명함.	필수적임.
위스콘신	작수해의 11월 30일까지 제출된 정당의 후보자들을 위원회에서 임명함.	필수적임.
와이오밍	5월의 셋째 주 화요일까지 제출된 정당의 후보자들을 임명한 후,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제출된 후보자들을 추가로 임명함.	필수적임.

○ 투표소 종사자에 대한 수당은 주에서 정한 법률에 따름.

-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수당은 카운티에 따라 다름. 예를 들어, 소노마 카운티는 조사관에게 일당 \$135, 일반 사무원에게 \$100를 지급함.⁸⁾
- 컬럼비아 특별구의 일반 투표소 종사자들은 선거 당 \$100의 수당을 수령함. 이들은 선거가 실시되는 주의 월요일에 투표소에서 선거 당 일 필요한 물품을 지급받고 각자의 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모임을 가지며, 이 모임은 통상 2~3시간이 소요됨.⁹⁾
- 조지아 주의 경우, 투표소의 일반 사무원들에게 \$60의 일당이 지급됨.¹⁰⁾
- 아이다호의 경우, 투표소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은 카운티 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는 주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어서는 안 됨.¹¹⁾

8) <http://vote.sonoma-county.org/content.aspx?sid=1009&id=1065> (검색일: 2014. 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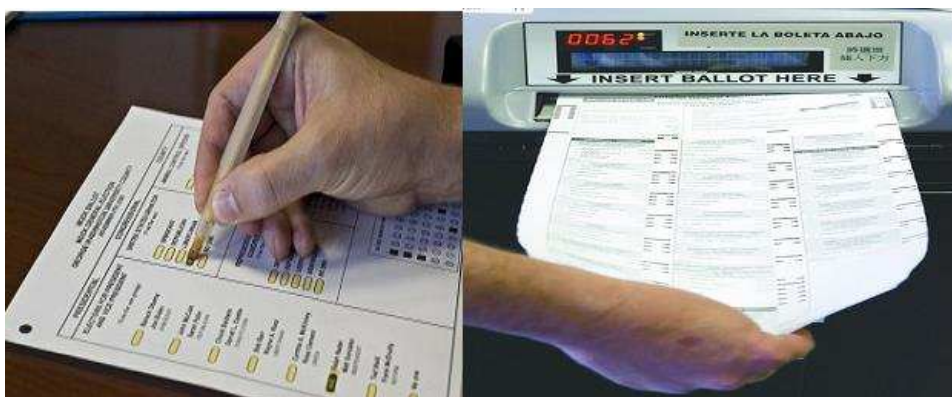
9) The United States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2007. "Compendium of State Poll Worker Requirements."

10) 2010 Georgia Code 21-2-98(b).

11) Idaho Code 34-303.

(5) 투표장비 활용 실태

-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플로리다 주에서 사용되었던 ‘천공 카드 투표 시스템(Punch Card Voting System)’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된 후, 연방 정부는 「the Help America Vote Act (HAVA)」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연방선거지원위원회(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AC)를 설립하여 각 주의 선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투표 장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투표 방식은 ‘투표용지 광학스캔 시스템(Optical Scan Paper Ballot System)’이며, ‘직접전자기록(Direct Recording Electronic, DRE)’시스템의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 반면, ‘천공 카드 투표 시스템(Punch Card Voting System)’의 사용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 ‘투표용지 광학스캔 시스템’은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기입하면, 이를 스캔하여 전자 장치에 기록하는 방식임.¹²⁾
- 다음의 사진은 ‘투표용지 광학스캔 시스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 및 스캔 장치임.¹³⁾



12) <https://www.verifiedvoting.org/resources/voting-equipment/> (검색일: 2014. 5. 4.)

13) <http://www.newswise.com/articles/voter-verifiable-voting-system-ensures-accuracy-and-privacy;>
<http://www.news-register.net/page/content.detail/id/512624.html> (검색일: 2014. 5. 4.)

- ‘직접전자기록시스템’은 유권자가 자신이 선택한 후보를 직접 컴퓨터 메모리에 입력하는 방식임.¹⁴⁾
- 다음은 ‘직접전자기록시스템’에 사용된 투표 장비의 예시임.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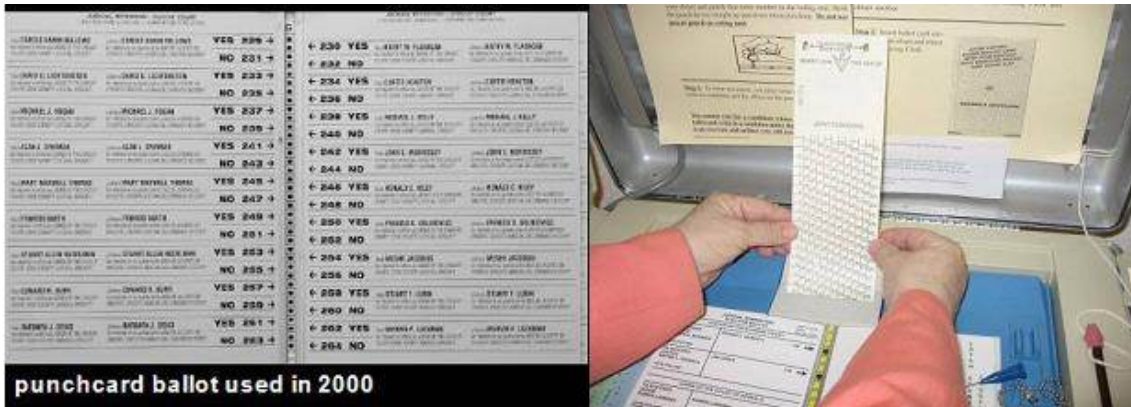
- ‘직접전자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많은 주에서는 사후 개표 과정에서의 감사를 위해 투표기록을 별도의 투표용지에 기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계가 고장을 일으킬 경우나 투표 대기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하여 투표용지를 상비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천공카드 투표시스템’은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나 선택지 옆에 제공되는 장치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서 기표하는 방식임.¹⁶⁾
-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방식으로 인해 논란이 야기된 이후, 천공카드 투표 시스템은 대부분 직접전자기록방식 혹은 투표용지 광학스캔 시스템으로 대체되었으며, 2012년 연방 동시선거 기준으로 아이다호 주의 네 개 카운티에서만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¹⁷⁾

14) <https://www.verifiedvoting.org/resources/voting-equipment/> (검색일: 2014. 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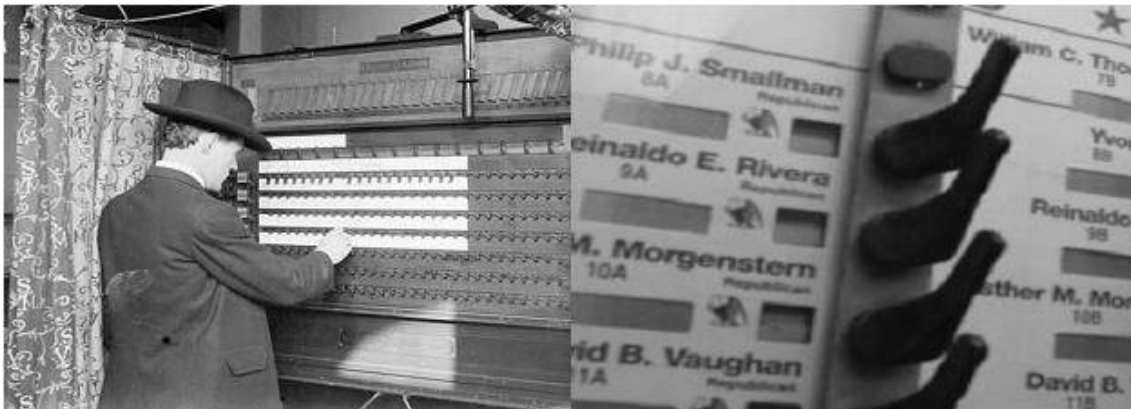
15) <http://uspolitics.about.com/od/elections/ig/History-of-Voting-Systems/DRE-or-Touchscreen.htm>;
<http://itworldcdm.blogspot.com/> (검색일: 2014. 5. 4.)

16) <https://www.verifiedvoting.org/resources/voting-equipment/> (검색일: 2014. 5. 4.)

○ 다음은 ‘천공카드 투표 시스템’에 이용되는 장비의 예시임.¹⁸⁾



○ 과거에는 레버 머신을 이용한 투표장비가 널리 사용되었으나, 2012년 선거 현재 이 방식은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음.¹⁹⁾



17) <https://www.verifiedvoting.org/resources/voting-equipment/> (검색일: 2014. 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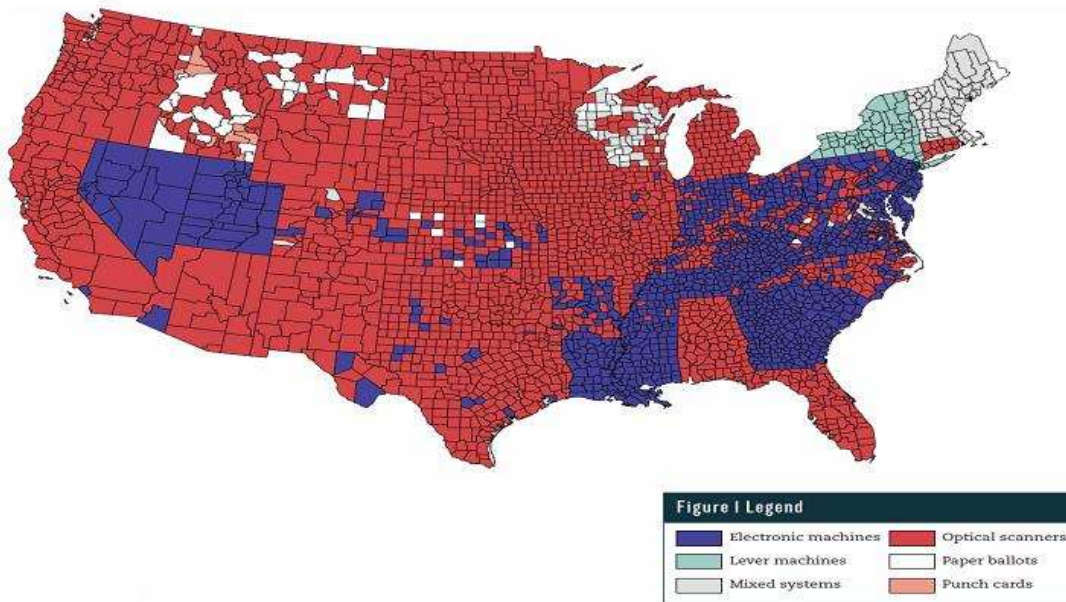
18) http://www.usabilityprofessionals.org/upa_publications/upa_voice/volumes/2006/february/designing_better_elections.html; <http://uspolitics.about.com/od/elections/ig/History-of-Voting-Systems/Punch-Cards.htm> (검색일: 2014. 5. 5.)

19) <https://www.verifiedvoting.org/resources/voting-equipment/> (검색일: 2014. 5. 4.)

레버(일종의 스위치)머신에는 각 후보자의 이름이 기계 전면의 특정 레버(스위치)에 직사각형 형태로 배열되어 있음.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후보의 레버를 당기는 방식으로 기표를 하게 됨.

투표자가 기표후 투표부스를 나오면 투표된 레버는 자동적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고 해당 후보자의 득표수가 카운트됨. 이 방식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투표용지를 제작할 필요가 없고 개표원들은 집계기에 의해 기록된 숫자를 확인하는 것으로 후보자의 득표수를 확인하게 됨. 재검표와 감사는 각 장치에 기록된 전체수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됨. (편집자주)

- 다음의 지도는 2008년 선거를 기준으로 선거에 사용된 투표 방식을 카운티별로 나타낸 것임.²⁰⁾



- 뉴욕 주는 레버 머신을 사용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현재 뉴욕 주는 투표용지 광학스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²¹⁾

(6) 투표용지 작성 방법

- 투표용지에 기입된 후보자의 순서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미치는 영향, 소위 선거기호 효과(the ballot order effects)에 대한 연구들은 투표용지에 가장 상위에 기입된 후보자가 유리하다고 주장함.²²⁾

20) <http://www.kurzweilai.net/the-state-of-the-us-election-system> (검색일: 2014. 5. 5.)

21) <http://www.votethenewwayny.com/en/using-the-new-voting-system/default.aspx> (검색일: 2014. 5. 5.)

22) Miller, Joanne M., and Joa A. Krosnick. 1998. "The Impact of Candidate Name Order on Election Outcomes." *Public Opinion Quarterly* 62: 291-330.

- 이러한 선거 기호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기입되는 후보자의 순서를 무작위적으로 정한 후 이를 투표구별로 순환배열하는 방식이 요구됨.
- 일부 주에서는 상기의 기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음. 50개 주 가운데 12개 주만이 투표구별 순환배열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기타의 주에서는 순환배열방식 대신 알파벳 순서대로 순서를 배정하거나 추첨, 혹은 현직자에게 가장 상위의 순위를 배정하거나 이전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을 고려하여 순서를 배정함.²³⁾
- 다음의 표는 각 주별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 배정 방식을 정리한 것임.²⁴⁾

투표구별 순환배열방식 (12개주)	투표구별 순환배열 방식이 사용되지 않음		
	알파벳 순서 (7개주)	추첨 (10개주)	기타 (21개주)
알래스카, 아칸소, 캘리포니아,아이다호, 캔자스, 켄터키, 몬태나, 네브라스카, 뉴햄프셔, 뉴저지,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앨라배마, 하와이, 루이지애나, 메인, 네바다, 노스캐롤라 이나, 버몬트	콜로라도, 일리노이,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오리건,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로드아일랜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애리조나, 코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아이오와,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뉴욕,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텍사스, 유타, 워싱턴, 위스콘신, 와이오밍

23) Miller, Laura. "Election by Lottery: Ballot Order, Equal Protection, and the Irrational Voter." NYU Journal of Legislation and Public Policy 13: 373-405.

24) Miller, Laura. "Election by Lottery: Ballot Order, Equal Protection, and the Irrational Voter." NYU Journal of Legislation and Public Policy 13: 373-405.

2. 개표소 운영 실태²⁵⁾

- 일부 주는 개표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여 투표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전자투표기를 통한 득표 기록과 별도로 투표자가 기재한 투표용지와 투표기록을 계산하여 이를 전자 개표 기록과 비교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22개 주에서 이러한 감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표용지(투표용지 사용 시) 및 메모리 카드(전자투표기 사용 시) 누락, 혹은 투표한 유권자 기록과 실제 투표 숫자의 불일치 등의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됨.
- 2008년 미네소타주 연방상원의원선거에서 최초의 개표 결과 Al Franken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수작업으로 검표 및 재검표를 실시하여 총 3백만에 이르는 표를 다시 계산한 결과 Norm Coleman 후보가 최종 승자로 결정되었음. 이는 투표용지 광학 스캔 시스템을 통해 유권자들의 투표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
- 반면, 2006년의 플로리다 연방하원의원선거 13 선거구의 개표 결과 Vern Buchanan 후보가 Christine Jennings 후보를 369표 차이로 앞섰으나, 지역구의 다섯 개 카운티 중 하나인 사라소타 카운티의 18,000표가 계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사라소타 카운티는 투표용지나 별도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 직접 전자기록 시스템을 사용하여 해당 투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

25) Smith, Pamela, Michelle Mulder, and Susannah Goodman. "Counting Votes 2012: A State by State Look at Voting Technology Preparedness."

- 2008년 오하이오 주의 예비선거에서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 최소한 11개 카운티의 투표 기록이 손실되었음. 주 국무부에 따르면 수시간이 지날 때까지 표가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는 프로그래밍 상의 에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음.



영국

영국 연구관 : 윤성원

1. 투표소 운영 실태

(1) 관련 규정

- 선거관리위원(Retuning Officer: RO)은 「국민대표법 1983 (Section 23,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RPA 1983)」에 따라 투표소 설치 및 자원 조달 계획 전반을 책임질 의무가 있음.
- 영국 법원은 의회가 해당 권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한다고 명시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운영에 있어 자유 재량권을 가진 것은 아님.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를 편애하거나 후보자를 판단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됨.

(2) 투표소 운영

-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반면, 영국 내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선거구(constituency)내 투표구(投票區; polling districts)를 결정하고 유지해 나갈 별도의 책임이 있음.
- 영국 의회 총선을 위한 각 선거구는 여러 투표구들로 이뤄지며 투표구는 다시 여러 개의 투표지역(polling place)으로 나뉨. 각 투표지역은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투표소를 관장할 수 있으며 하나의 건물,

즉 동일한 투표지역에 두 개의 투표소가 설치되는 경우라도 각 투표소의 선거 직원 및 투표함, 기표대 등은 별도로 관리·운영됨. 요컨대, 투표구와 투표지역은 지방 정부에 의해 확정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투표지역에 몇 개의 투표소가 필요하며 각 투표소에 유권자를 얼마나 배치할지 등을 결정해야 함.

- 영국 전역에서 투표소 운영시간은 장소를 불문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투표 감독관(Presiding Officer)은 늦어도 오전 6시 30분까지 도착해 투표함을 포함한 투표행위에 필요한 제반 물품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함. 동 확인 작업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 투표 감독관은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함.

가. 투표소 설치 현황

- 원만한 투표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 정부로 하여금 설치·운영하게 하거나 의회 예산의 지원을 받는 학교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 2010년 5월에 실시된 총선의 경우 영국 전역의 약 40,000개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 지자체가 투표소 설치·운영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영국 선거제도의 특성상 전국 단위의 설치장소별·층수별 투표소 현황 등에 대한 총괄 집계는 중앙 수준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²⁶⁾
- 민간시설 이용시 확보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는 「RPA 1983」에서

26) 설치장소별 투표소 현황 질의에 대한 영국 선거관리위원회(The Electoral Commission)의 공식답변 (2014.4.30.).

규정된 ‘검토(review)’ 개념에서 찾을 수 있음. 이와 관련, 「선거등록 및 관리법 2013 (Electoral Registration and Administration Act 2013)」은 의무검토(compulsory review)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법이 정한 16개월의 시한 내에 지난 선거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 작업을 완료해야 함. 동 법에 따라 차기 검토 기한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로 정해졌으며, 각 지자체는 해당 기한 내 언제 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 이에 대한 실질적 결정은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담당함.

- 검토 사항 내에 투표소로 활용된 건물 내·외부 평가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차기 선거에서 잠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공기관, 민간시설, 임시구조물 등을 선정해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민간시설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민간 소유 부지에 대한 사용을 요청할 권리만 있음.²⁷⁾

「국민대표법 1983」

23 의회선거 규정.

(2) 선거관리위원회는 의회선거 규정에 따른 선거의 효율적 실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24 선거관리위원: 잉글랜드 및 웨일즈.

(1)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역 내, 의회선거에서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7) ‘Review of Polling Districts, Polling Places and Polling Stations’, 11(a), *Report no JCE/01/14/WL of the Electoral Registration Officer*, p. 3 (6 January 2014: North East Derbyshire District Council).

- (a) 카운티 인접지역 혹은 해당지역 자치주(카운티) 지역구의 경우 카운티 장관;
- (b) 버로우 인접지역 혹은 해당지역 자치구(버로우) 지역구의 경우 지방 자치회 의장;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23 Rules for parliamentary elections.

(2)It is the returning officer's general duty at a parliamentary election to do all such acts and things as may be necessary for effectually conducting the election in the manner provided by those parliamentary elections rules.

24 Returning officers: England and Wales.

(1)In England and Wales, the returning officer for a parliamentary election is—

- (a)in the case of a county constituency [in England] which is coterminous with or wholly contained in a county, the sheriff of the county;
- (b)in the case of a borough constituency [in England] which is coterminous with or wholly contained in a district, the chairman of the district council;

나. 선거인의 투표편의 제공방안

- 투표소 설치요건과 관련, 영국 선거관리위원회(The Electoral Commission)는 투표소 설치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기본 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투표소 외부 항목

- ▶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소의 위치를 쉽게 인지하고 찾아올 수 있는 명확한 접근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 ▶ 투표소 입구 근처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가?

- ▶ 장애인들을 위한 투표소 접근 신호체계(signage)가 있는가?
- ▶ 휠체어에 타고 있는 장애인들이 해당 신호체계를 읽을 수 있는가?
- ▶ (총선의 경우) ‘오직 한 후보자에게만 투표하십시오. 투표용지에 다른 표시를 할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이 모든 유권자들이 볼 수 있는 투표소 내부와 외부 장소에 부착되어 있는가?
- ▶ 층간 통로(경사로) 내 장애물은 없는가?

- 투표소 내부 항목

- ▶ 투표소 구성이 내부 공간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 ▶ 실내조명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가? 자연광 활용이 가능한가?
- ▶ 투표함과 투표 감독관과의 거리가 즉각 맞닿을 정도로 가까운가?
- ▶ 모든 투표함이 제대로 봉인되어 있는가?
- ▶ 휠체어 사용자가 투표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 ▶ 휠체어 사용자가 기표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 ▶ 기표대가 내부 조명 및 자연채광에 맞도록 적절히 세워져 있는가?
- ▶ 투표 감독관과 투표소 직원이 투표함 및 기표대를 명확히 볼 수 있는가?
- ▶ 각 기표대에 비치된 연필은 사용하기에 적절하도록 정돈되어 있는가?
- ▶ 확대 인쇄된 투표용지가 모든 투표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 ▶ 소형 견본 투표용지가 유효·적절하며 유권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가?
- ▶ 정확한 일련번호가 매겨진 투표용지들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가?

-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물품 및 시설 제공은 영국 투표소의 대표적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음. 지자체들은 장애를 지닌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 원칙은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선관위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원활한 투표행사를 위해 투표 감독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장애인들은 더불어 그들의 투표행위를 도울 수 있는 제3자를 대동할 수 있음 (단, 제3자는 18세 또는 투표자격을 지닌 직계가족이어야 함).
- 시각장애인 혹은 손과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활한 비밀투표를 진행을 위해 투표용지에 부착된 촉각 장치(tactile voting device)를 이용할 수 있음.
- 지자체 의회는 투표지역 및 투표소 지정시 반드시 장애인 유권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함. 만일 당해 유권자가 육체적 장애로 인해 투표소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 투표 감독관은 투표용지를 해당 유권자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음.
- 투표안내도우미 배치 현황과 관련, 투표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우선 투표 감독관은 투표소 내 투표행위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지시를 따라야 함. 감독관은 투표소 내 투표관련 물품들의 배치를 구성하고 투표소 개폐가 정시에 이뤄지도록 해야 함. 또 투표소 직원(Poll Clerks)들에 임무를 부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 투표소 직원들은 감독관을 보좌하는 역할로, 투표소 배치 현황(layout)을 조직하고 투표

용지를 배급하며 유권자들을 안내하는 동시에 투표함을 개표소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업무도 담당함.

- 투표소 밖에는 ‘텔러(teller)’로 불리는 사람들이 서있거나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각 정당을 대표해 나온 자원봉사자들로 유권자들의 투표소 출입을 토대로 투표수를 계산하거나 선거를 끝낸 유권자들에게 투표번호, 성명 혹은 주소 등을 묻기도 함. 또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유권자들을 가려내 투표 종료 전 투표를 독려하는 역할도 담당함. 이들은 투표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은 없으며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이 이들의 질문에 답할 의무도 없음. 선거법은 텔러들이 투표소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²⁸⁾
- 투표 감독관 및 기타 투표소 직원 등을 포함한 투표안내도우미 모집방법, 수당, 근무시간 등은 각 지자체별로 다르나, 보통 공개 모집으로 선발함. 지원자들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지원서를 작성해야 하며, 국민보험번호(National Insurance Number)와 출생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또 대체로 선발인원보다 지원자 수가 많은 관계로 지원시 관련 경력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등을 기재하는 것이 필수임.
- 예를 들어, 5월 22일 진행되는 유럽의회선거 및 지역선거를 도울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는 런던 내 힐링던(Hillingdon) 자치구의 경우 지원 마감일이 3월 31일이었음. 동 자치구는 투표소 운영을 도울 지원자들의 근무시간을 ‘오전 6시 15분부터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하

28) *European Parliamentary Election: Media Handbook*, p. 9 (March 2014: The Electoral Commission).

는 시간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투표 감독관의 경우 370파운드(약 65만원), 투표소 직원은 250파운드(약 43만원)를 수당으로 받게 됨. 또 개표도우미에 대한 보수는 주중 100파운드(약 17만원), 주말 140파운드(약 24만원)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

다. 투표소 잦은 변경에 따른 문제 사례와 대책

- 역대 각종 선거에서 투표소의 변경에 따른 문제가 크게 이슈화된 적은 없음. 오히려 투표소 운영 및 접근성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임. 대표적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Ipsos MORI가 2010년 5월 실시된 총선 및 지방선거 직후 실시한 유권자 설문조사 결과 설문대상에 포함된 전체 유권자의 75%가 투표소에서의 투표절차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표시함. 특히 실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투표소 위치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93%에 이름.²⁹⁾
- 따라서 투표소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으며, 투표소 변경시 안내방법 및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별 등록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 직전에 투표안내카드(poll card)를 발송함. 투표안내카드의 형태 및 양식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대체로 유권자 본인의 성명, 집주소를 포함해 투표소의 위치, 연락처, 투표시간 등이 자세히 나와 있음 <그림 1 참조>.

29) Ipsos MORI, *May 2010 Post-election survey UK general election and local elections in England*

2

- 당해 문제는 기본적으로 투표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라는 선거법 규정에 의해 비롯된 것임.³⁰⁾ 규정에 따르면 투표용지는

30) Rule 1 Schedule 1, RPA 1983.

오후 10시 이전까지 절차에 따라 발급된 것만이 유효하며 10시 이후 투표시간을 연장하거나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의 어떠한 재량행위도 허용되지 않음.³¹⁾ 다만 오후 10시 이전에 투표용지를 적법절차에 따라 배부 받은 유권자들은 10시가 넘어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동 규정은 또한 영국 법원의 두 차례 판결로 뒷받침됨.³²⁾

- 결국 오후 10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서서 기다렸지만 긴 줄로 인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버밍엄(Birmingham) 지역 선거구에 위치한 한 투표소의 경우 총 등록 유권자가 2981명에 달했으며 투표 종료 시한까지 형성된 긴 줄로 인해 65~100명(추정치) 정도의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발급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함. 맨체스터(Manchester) 내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 종료시간까지 줄을 서 있던 약 200명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함.
- 선관위는 당해 문제를 유발한 원인으로 △투표 장소로서의 협소성·부적합성 등으로 인한 투표소 자체의 문제 (공립학교를 제외하고 투표장소로서 잠재적으로 적합한 기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의 법적 권한 부재) △투표소별 유권자 과다 할당³³⁾ △유권자수에 비해 투표소 직원 수 부족 등을 지적함.

31) 이와 관련, 국민대표법 1983은 폭동 또는 폭력사태 발생으로 인해 투표가 익일로 연기되는 상황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Rule 42 Schedule 1, RPA 1983」 참조.

32) The West Division of the Borough of Islington [1901] 5 O'M & H 120; Fermanagh and South Tyrone [2001] NIQB 36.

33) 영국 사법부(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는 투표소 한 개당 할당되는 유권자수가 250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Acting Returning Officers' Expenses: Guidance Notes, UK Parliamentary Elections*, 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 Electoral Policy Division, February 2005.

- 선관위는 성숙한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영국의 투표시간(15시간)이 충분하다고 하면서도 투표 종료와 관련한 영국 내 규정이 지나치게 제한적(restrictive)이라고 지적함. 민주주의 시민의 주요 권한인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에 출석한 유권자들에 대해 재량을 부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뉴질랜드와 호주의 경우 투표 종료 시각에 투표지(투표소를 둘러싼 부지 포함) 내에 위치한 모든 유권자들에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³⁴⁾
- 선관위는 당해 문제 해결을 위해 투표 종료 시각 투표지역 내에서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는 유권자 모두에게 투표권 행사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투표소 운영의 기본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해당 규정의 개편이 선거관리위원들의 원활한 활동에 긍정적 역할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선관위는 특히 영국 내 투표소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가 불필요하고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함. 투표소 운영에 있어 수많은 인적·조직 구성이 혼재됨으로써 운영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또한 법적 책임을 지닌 개인과 조직들 - 영국 의회 선거관리위원, 지자체가 임명하는 선거관리위원, 지자체, 법무부, 선관위 등 - 이 과다하게 많은 관계로 절차상으로도 매우 복잡하다고 지적함. 이와 관련, 선관위는 대조적으로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의 경우 선거 운영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선거위원장(Chief Electoral Officer)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부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 해결에 대

34) 2010 UK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 Interim report: review of problems at polling stations at close of poll on 6 May 2010 (The Electoral Commission: 20 May 2010), p. 29.

한 정부 측 입장 표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선관위는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함.³⁵⁾

라. 투표장비 활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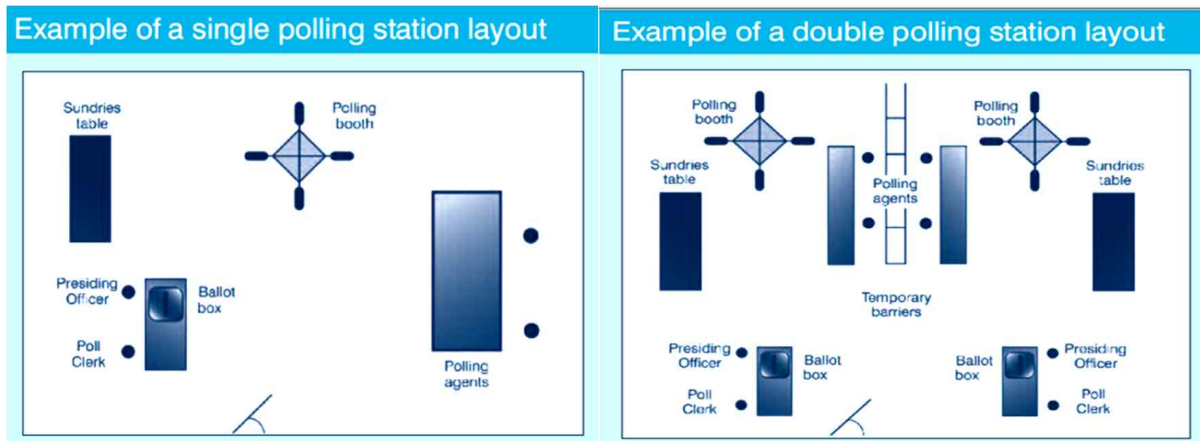
○ 기표대의 활용 실태 및 변천과정

- 기표대 활용과 관련한 일괄적 강제규정은 없음. 따라서 지자체 및 선거구별로 기표대의 형태 및 활용 양상이 상이함 <그림 2 참조>. 다만 투표 감독관 및 투표소 직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투표소 내부 투표물품들을 배치할 때 기표대가 사각지대에 위치해서는 안 됨. 또한 투표의 비밀확보를 위해 투표함과 기표대를 비롯한 투표장비는 유권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동시에 투표소 직원들이 해당 장비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야 함. 아울러 ‘비밀투표 준수’를 지시하는 안내문이 모든 투표소에 비치되어야 함. 선관위가 권고하는 투표소 내부의 이상적 배치도는 <그림 3> 참조.



<그림 2> 런던 해크니(왼쪽) 투표소와 남부 잉글랜드 뉴 포레스트 투표소의 기표대

35) *ibid.*, p. 33.



<그림 3> 선관위의 투표소 배치 권고안. 우측 그림은 동일 건물 내 두 개의 투표소가 설치된 경우³⁶⁾

○ 투표함의 활용 실태 및 변천과정

- 투표함의 사양과 관련, 영국은 지자체별로 투표함 양식을 결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통일된 양식이 없음 (영국 내 투표소에서 주로 사용되는 투표함 양태는 <그림 4> 참조).³⁷⁾ 투명 투표함을 사용하는 선거구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림 4> 영국 잉글랜드 중동부의 레스터셔 및 기타 지역에서 사용중인 투표함(왼쪽)과 보다 최근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투표함 디자인

36) *Handbook for Polling Station Staff Supporting a UK Parliamentary Election*, The Electoral Commission, pp. 7-8.

37) 투표함 활용 실태 관련 질의에 대한 영국 선거관리위원회(The Electoral Commission)의 공식답변 (2014.4.30.).

- 거의 대부분 지자체들은 일회용이 아닌, 재사용이 가능한 투표함을 활용하고 있음. 당해 사항 역시 중앙이 아닌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보관방법 및 비용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별도 문의가 필요한 부분임.
- 다만 선관위는 선거 결과 발표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을 포함한 투표장비들을 지자체별 보관소로 반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동 규정은 그러나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임.³⁸⁾

○ 투표용지 작성방법

- 후보자 및 정당의 기재순서와 관련, 영국은 투표용지에 지명이 확정된 정당 (유럽의회 선거시) 및 후보자의 성명이 알파벳순으로 기재되며 정당기호제가 없음 (<그림 5> 참조). 북아일랜드의 경우 투표용지에 정당 대신 후보자들의 이름만 알파벳순으로 기재됨. 거대정당에 유리한 정당기호제의 부재는 투표구별 순환배열 방식의 필요성을 상쇄함.
- 투표용지 디자인과 관련, 선관위는 지난 2009년 투표용지에 정당 이름을 기재시 등록된 정당 로고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38) *Part F - After the declaration of results*, Local government and European Parliamentary elections in England on 22 May 2014: guidance for Returning Officers, The Electoral Commission, p. 8.



<그림 5> 영국의 투표용지

2. 개표소 운영 실태

(1) 관련 규정

- 개표 역시 투표소 운영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각 선거구 지역을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개표 전반과 관련

된 법적 근거는 「국민대표법 1983 (Rule 44~49,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RPA 1983)」에 규정되어 있음. 각 후보는 개표 에이전트 (counting agents)를 임명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에이전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 단 개표 에이전트의 수는 후보별로 동일해야 함.

「국민대표법 1983」

개표

45.-(1)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a) 개표위원 참관 하에 각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빼야 하며, 투표용지를 계산하고 기록한다. 선거위원 참관 하에 각 투표 장부를 확인한다.

투표용지 결정

48. 선거관리위원의 투표용지에 관해 제기되는 어떠한 질의에 대한 결정도 최종적이며, 다만 동 결정은 선거탄원에 의한 재검토의 대상이 된다.

투표의 동수

49. 개표결과 (제반 재개표 포함) 후보자 간 동수로 나올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추첨 진행을 결정할 수 있으며, 추첨에 의해 결정된 후보자가 추가 득표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The count

45.-(1) Before the returning officer proceeds to count the votes, he shall-

(a) in the presence of the counting agents open each ballot box and, taking out the ballot papers in it, count and record the number of them and in the presence of the election agents verify each ballot paper account;

Decisions on ballot papers

48. The decision of the returning officer on any question arising in respect of a ballot paper shall be final, but shall be subject to review on an election petition.

Equality of votes

49. Where, after the counting of the votes (including any re-count) is completed, an equality of votes is found to exist between any candidates and the addition of a vote would entitle any of those candidates to be declared elected, the returning officer shall forthwith decide between those candidates by lot, and proceed as if the candidate on whom the lot falls had received an additional vote.

(2) 개표소 운영

- 개표소 운영 역시 투표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국 단위의 설치장소별 개표소 수 등의 총괄 집계는 중앙 수준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³⁹⁾ 이는 개표 장소가 지역 선거관리위원(Local Returning Officer)들에 의해 지정되는 영국 선거제도의 특성에서 비롯되며, 이와 같은 운영 체계의 복잡성이 중앙 차원의 선거 운영 및 통계 산출에 비효율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⁴⁰⁾
- 지난 2010년 총선의 경우, 영국 전역에서 총 372명의 선거관리위원들이 632개의 선거구를 담당한 바 있음. 각 선거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한 호칭도 지역에 따라 다양함.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경우 투·개표 과정 전반은 선거관리위원 대행(Acting Returning Officer)으로 불리는 선거등록관(Electoral Registration Officer) 책임 하에 운영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선거등록관은 자치단

39) 설치장소별 개표소 현황 질의에 대한 영국 선거관리위원회(The Electoral Commission)의 공식답변 (2014.4.30.).

40) 영국 선거제도 운영상의 비효율성 혹은 선거운영 구조의 복잡성에 대해서는 *2010 UK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 Interim report: review of problems at polling stations at close of poll on 6 May 2010 (The Electoral Commission: 20 May 2010) 및 *Report on the administration of the 2010 UK general election* (The Electoral Commission: July 2010) 참조.

체의 장이 겸임하게 됨. 북아일랜드 지역에서는 선거위원장(Chief Electoral Officer)이 당해 지역 내 영국 의회 선거를 비롯한 제반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의 역할을 담당함.

(3) 개표장비

가. 개표시 기계장비, 전산조직 활용여부

- 2014년 5월 동시에 진행되는 유럽 의회 및 지방선거에서 개표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기계 및 전산조직은 사용되지 않음.⁴¹⁾
- 다만 2000년 이후 전산조직을 활용한 실험적 개표 시도는 수차례 이뤄진 바 있음.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2000년 이후 6차례 지자체 선거에서 소규모로 시도된 바 있으며, 그 외 런던 의회 및 런던 시장 선거에서도 간헐적으로 사용되었음. 스코틀랜드의 경우 선거제도가 최다득표당선제(First Past the Post)에서 단기이양식투표제(STV)로 바뀌면서 전산조직을 활용한 개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07년 스코틀랜드 의회 및 지방선거에서, 이어 2012년 5월 지방선거에서 활용된 바 있음.

나. 개표관련 장비의 오작동으로 인해 문제가 된 사례 및 대책

- 북아일랜드 정부는 지난 2012년 영국 전역에서 전산조직을 활용한 개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크게 △전산조직 운영상의 준비부족 및 돌발 상황 대처능력 △비용 △기술적 어려움 △보안 △소요시간 △정확성 및 투명성 등으로 나누어 분석함.⁴²⁾

41) *Media handbook: European Parliamentary election* (The Electoral Commission: March 2014), p.31.

- 전산 조직의 운영미비와 관련, 전산 개표가 다양한 디자인의 투표용지를 시험하는 데 한계를 보였고 특히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비용 측면에서는 2012년 런던 광역지역 선거(GLA)의 경우 전산 개표에 약 390만 파운드가 사용됨으로써 수개표시 들어간 비용 360만 파운드보다 오히려 많은 비용이 소모됨. 2007년 스코틀랜드 지방 선거에서는 몇몇 개표소에서 전산개표 장비의 오작동으로 투표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전산개표 장비가 손상된 투표용지를 읽지 못하는 등 기술상의 어려움이 발생함. 아울러 전산조직의 특성상 해킹 등 보안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으며, 전산개표 과정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개표결과에 민감한 정당의 당원 및 후보자 등 당사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실정임.
- 전산개표시 드러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선관위에서는 정부의 전산개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실시, 보안 확립 및 이해당사자들이 전산개표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의 강구, 전산개표 실시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제 분석·검토 등을 제시하고 상기 조치들이 이뤄지기 전까지 전산조직을 활용한 개표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권고함.⁴³⁾

42) *Electronic Vote Counting Systems*, Research and Information Service Briefing Paper (Northern Ireland Assembly: 26th April 2012), pp. 2-7.

43) *Taking forward the Electoral Commission's independent review of the 2007 Scottish Parliamentary and local government elections* (The Electoral Commission: 29 November 2007).

(4) 개표의 공정성 확보방안

가. 개표부정 의혹제기 사례

- 최근의 개표부정 관련 판례로는 "Ali v Bashir" 를 들 수 있음.⁴⁴⁾ 2013년 5월 남부 잉글랜드 서레이 지역에서 진행된 한 지자체 선거에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신청인 X는 개표결과 불과 16표차로 또 다른 후보자 B에게 당선을 빼앗김. X는 B와 그의 선거팀이 가상의 인물들을 동일 지역 내 선거인단으로 등록하고 우편투표 대상으로 등록한 뒤 해당 투표용지들을 가로채는 등 편법과 부정으로 B의 당선에 기여하게 했다고 주장함. 조사 결과 '유령 유권자(ghost voters)'로 등록된 선거인단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해당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 득표수가 B의 당선에 기여한 16표를 넘을 수 있다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형성된 점에 비추어 B의 당선이 취소됨. 동 사건은 비록 개표행위 자체의 부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개표과정에서 필수적인 우편 투표용지 및 등록 유권자들의 투표용지 계상(計上)상의 혼란을 야기한 범죄라는 점에서 개표행위 부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짐. 동 판결의 근거는 불법 또는 부정을 저지른 후보자의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민대표법 1983 (s.159(1), RPA 1983)」 과, 선거부정 방지를 강조한 동법 s.164(1)(a)에 따른 것임. 우편투표 부정을 활용한 유사 개표부정 사례는 2004년 버밍엄시의 애스톤 자치구에서도 불거진 바 있음.

44) *Mohammad Ali v Mohammed Bashir, Ray Morgan*, 29 July 2013, High Court of Justice Queen's Bench Division, Case No: M/336/12, 2013 WL 5336741.

나. 개표부정 의혹제기 방지대책

-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개표참관 및 개표결과 실시간 공개가 가장 대표적이나,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개표과정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의혹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개표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음.
- 투표함 통제관(Ballot Box Control Supervisor)을 지명함으로써 투표 종료 후 봉인된 투표함의 이송, 투표용지 계상 절차 확인, 개표관 및 개표직원 교육, 개표 이후 투표함 및 선거장비의 지자체 보관소 이송 등을 포함한 투표함의 봉인부터 이송·반납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게 함.
- 법적으로 규정된, 개표과정 참관이 가능한 인원은 다음과 같음.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 보좌진, 후보자 및 후보자별 1인의 초청자, 선거 및 개표 에이전트, 선관위 대표자, 등록된 참관자, 선거관리위원에 의한 초청자 등.
- 투표함 이송 과정은 이해당사자들의 입회 없이도 가능하나 투표함 봉인 및 개방 과정은 반드시 해당 이해당사자들의 참관 하에 진행되어야 함.
- 선거관리위원은 후보자 및 에이전트들에게 선거결과 공고 전 반드시 예비 개표결과를 숙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함. 이 단계에서 후보자 및 선거 에이전트들은 재개표, 재재개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재개표 요구에 대한 수락 권한은 선거관리위원이 지니며 선거관리위원 판단 하에 재개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재개표는 두 번 이상 이뤄질 수 있음.

- 「구조개선 및 거버넌스법 2010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CRAG 2010)」은 총선의 경우 선거관리위원들로 하여금 투표 종료 후 4시간 이내에 개표를 위한 과정을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역의 선거관리위원들은 특정 선거구의 지리적 특성상 개표지역까지의 투표함 이송이 선거 익일에 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음. 또 일부 지역에서는 적합하고 경륜 있는 투표·개표직원의 부족으로 인해 투표 종료 후 즉각 개표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요구도 있음. 한편 2014년 9월 18일 진행되는 스코틀랜드 분리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의 경우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10시 이후 즉각 개표가 진행되며 결과는 익일인 19일 발표될 예정임.



프랑스 연구관 : 김청진

1. 투표소 운영 실태

(1) 관련규정

- 투표소 설치, 투표 사무원 구성 방법 및 규모는 「선거법(Code électoral)⁴⁵⁾」에 규정되어 있음. 이중 투표소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아래와 같음

「선거법」(Code électoral)

제 R40조

선거인은 지역적 사정과 선거인의 수를 감안하여 도지사의 규칙에 의하여 여러 투표소로 분할할 수 있다.

투표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규칙은 매년 8월 31일 전에 당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다음 연도 3월 1일에 발효하고 동년 동일에 발효되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데 고려된다.

제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규칙은 행정 구역 또는 법 제 124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의 변경을 참작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투표 장소는 투표소의 투표소가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전 항의 규칙에서 꼬뮌의 중앙 집계소를 지정한다. 하나의 꼬뮌에 복수의 선거구 또는 선거구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전 항의 규칙에서 꼬뮌에 속한 각 선거구마다 또는 선거구 일부마다 중앙 집계소를 지정한다.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 장소 및 중앙 집계소를 지정하는 규칙은 늦어도 선거 운동이 개시되기 이전에 해당 꼬뮌에 고시한다.

Article R40

Les électeurs sont répartis par arrêté du préfet en autant de bureaux de vote que l'exigent les circonstances locales et le nombre des électeurs.

Tout arrêté modifiant le périmètre des bureaux de vote doit être notifié au maire avant le 31 août de chaque année. Il entre en vigueur le premier mars suivant et est pris en compte pour l'établissement des listes électorales entrant en vigueur à partir de cette date.

Toutefois, cet arrêté peut être modifié pour tenir compte des changements intervenus dans les limites des circonscriptions administratives ou des circonscriptions prévues par l'article L. 124.

Les lieux de vote sont désignés dans l'arrêté du préfet instituant les bureaux.

Lorsqu'une commune comprend plusieurs bureaux de vote, le même arrêté détermine le bureau centralisateur de la commune. Lorsqu'une commune comprend plusieurs circonscriptions ou fractions de circonscriptions électorales, le même arrêté détermine le bureau centralisateur de chaque circonscription ou fraction de circonscription au sein de la commune pour l'élection correspondante.

Sauf cas de force majeure, tout arrêté modifiant les lieux de vote et les bureaux centralisateurs est affiché au plus tard à l'ouverture de la campagne électorale dans la commune intéressée.

제 R42조

각 투표소는 소장1인, 참관인 2인 이상 및 해당 교원의 선거인 중에서 소장과 참관인에 의해 선임된 서기1인으로 구성한다.

투표소의 심결에 있어서 서기의 발언은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투표소 구성원 중 적어도 2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소장·참관인 및 서기는 다른 투표소에서 정식 직위 및 직무 대리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Article R42

Chaque bureau de vote est composé d'un président, d'au moins deux assesseurs et d'un secrétaire choisi par eux parmi les électeurs de la commune.

Dans les délibérations du bureau, le secrétaire n'a qu'une voix consultative.

Deux membres du bureau au moins doivent être présents pendant tout le cours des opérations électorales.

Le président titulaire, un assesseur titulaire ou le secrétaire d'un bureau de vote ne peuvent exercer les fonctions de membre titulaire ou suppléant d'un autre bureau de vote.

제 R43조

투표소장은 시장·부시장 및 기초의원이 명부상의 순서에 의하여 그 소장이 된다. 이들이 부재 중인 경우에는 시장이 해당 교민의 선거인 중에서 이를 지명한다.

투표소장이 사정이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소장이 기초 의원 또는 해당 교민의 선거인중에서 지명한 대리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리인은 투표소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서기가 사정이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관인 중 최고 연소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Article R43

Les bureaux de vote sont présidés par les maire, adjoints et conseillers municipaux dans l'ordre du tableau. A leur défaut, les présidents sont désignés par le maire parmi les électeurs de la commune.

En cas d'absence, le président est remplacé par un suppléant désigné par lui parmi les conseillers municipaux ou les électeurs de la commune, ou, à défaut, par le plus âgé des assesseurs. Le suppléant exerce toutes les attributions du président. Le secrétaire est remplacé en cas d'absence par l'assesseur le plus jeune.

제 R44조

각 투표소의 참관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명한다 :

- 출석한 각 후보자 또는 후보자 명부는 도의 선거인 중에서 1인의 참관인을 지명할 권리가 있다.
- 시장은 기초 의원 중에서 명부상의 순위에 따라 보조참관인을 지명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꼬핀의 선거인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투표일에 지명된 참관인의 수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결원된 참관인을 출석한 선거인 중 프랑스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자 중에서 충원한다. 충원의 우선순위는 최고 연장자 다음에 최연소자로 한다.

참관인은 수당을 받지 않는다.

Article R44

Les assesseurs de chaque bureau sont désignés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ci-après:

- Chaque candidat, binôme de candidats ou chaque liste en présence a le droit de désigner un assesseur et un seul pris parmi les électeurs du département ;
- Des assesseurs supplémentaires peuvent être désignés par le maire parmi les conseillers municipaux dans l'ordre du tableau puis, le cas échéant, parmi les électeurs de la commune.

Le jour du scrutin, si, pour une cause quelconque, le nombre des assesseurs se trouve être inférieur à deux, les assesseurs manquants sont pris parmi les électeurs présents sachant lire et écrire le français, selon l'ordre de priorité suivant : l'électeur le plus âgé, puis l'électeur le plus jeune.

Les assesseurs ne sont pas rémunérés.

제 R45조

참관인을 임명할 자격이 있는 각 후보자 또는 명부는 그 도의 선거인 중에서 참관인의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

기초의원인 참관인은 기초 의원 중에서 또는 꼬핀의 선거인 중에서 그의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대리인이 참관인의 지위를 대리하는 때에는 참관인의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개표 권한과 선거록 서명 권한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Article R45

Chaque candidat ou chaque liste en présence, habilité à désigner un assesseur, peut lui désigner un suppléant, pris parmi les électeurs du département.

Chaque conseiller municipal assesseur peut également désigner son suppléant, soit parmi les autres conseillers municipaux, soit parmi les électeurs de la commune.

Les suppléants exercent les prérogatives des assesseurs quand ils les remplacent. Ils ne peuvent toutefois les remplacer pour le dépouillement ni pour la signature du procès-verbal des opérations électorales.

제 R47조

각 후보자 명부 또는 후보자는 법 제 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언제든지 모든 선거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참관인의 투표소 출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참관인은 여러 개의 투표소에서 선거 활동 통제를 할 수 있다.

참관인 및 그 대리인은 자신들의 투표 통지서를 제시하여 투표가 행하여지는 도에 있는 선거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조인에 관한 전조의 규정은 이 조에 규정된 참관인 및 대리인에게 적용된다.

Article R47

Chaque liste de candidats ou, en cas de scrutin uninominal, chaque candidat a le droit d'exiger la présence en permanence dans chaque bureau de vote d'un délégué habilité à contrôler toutes les opérations électorales,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l'alinéa 1 de l'article L. 67 ; un même délégué peut toutefois être habilité à exercer ce contrôle dans plusieurs bureaux de vote.

Les délégués titulaires et suppléants doivent justifier, par la présentation de leur carte électorale, qu'ils sont électeurs dans le département où se déroule le scrutin.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R. 46 concernant les assesseurs sont applicables aux délégués titulaires et suppléants visés au présent article.

제 R48조

선거인은 투표소 내에서 어떠한 토론 및 심의도 하지 못한다.

Article R48

Toutes discussions et toutes délibérations des électeurs sont interdites à l'intérieur des bureaux de vote

제 R49조

투표소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할 권한을 갖는다.

투표소장의 허가 없이는 투표소 내외에 군인을 배치하지 못한다.

경찰 및 군지도관은 투표소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Article R49

Le président du bureau de vote a seul la police de l'assemblée.

Nulle force armée ne peut, sans son autorisation, être placée dans la salle de vote, ni aux abords de celle-ci.

Les autorités civiles et les commandants militaires sont tenus de déférer à ses réquisitions.

Article D56-1

Les locaux où sont implantés les bureaux de vote doivent être accessibles, le jour du scrutin, aux personnes handicapées, quel que soit leur handicap.

Les personnes handicapées, notamment celles qui se déplacent en fauteuil roulant, doivent pouvoir, dans des conditions normales de fonctionnement, y pénétrer, y circuler et en sortir, le cas échéant au moyen d'aménagements provisoires ou permanents.

제R56-1 조

투표소가 소재한 지역은 모든 장애인에 의해 장애의 종류를 불문하고 투표일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장애인은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장애인은 통상적인 조건에서 투표소에 진입하고 이동하고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임시의 또는 상시의 보조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Article D56-2

Les bureaux de vote doivent être équipés d'au moins un isoloir permettant l'accès des personnes en fauteuils roulants.

제 R56-2 조

투표소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자가 접근할 수 있는 기표대가 최소한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Article D56-3

Les urnes doivent être accessibles aux personnes en fauteuils roulants.

제 R56-3 조

투표함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Article D61-1

Les techniques de vote doivent être accessibles aux personnes handicapées, quel que soit le type de ce handicap. Le président du bureau de vote prend toute mesure utile afin de faciliter le vote autonome des personnes handicapées.

제R61-1 조

투표기는 모든 장애인에 의해 장애의 종류를 불문하고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투표소장은 장애인의 투표기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모든 유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5) 프랑스 「선거법」 (Code électoral) 전문 (검색 : 2014년 4월 20일)
<http://legifrance.gouv.fr/affichCode.do?cidTexte=LEGITEXT000006070239>

(2) 투표소 운영

가. 투표소 설치 현황

- 「선거법 제R40조」에 따라, 해당 선거구 투표소 설치는 지역 사정과 선거인의 수를 감안하여 해당 지역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프랑스 내무부에서는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하여 한 투표소당 선거인이 800~1,000명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음. 46)
- 프랑스 투표소는 전통적으로 관공소, 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에 설치됨. 투표서 현황은 최근 각 시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몇몇 인터넷 사이트47)에서도 검색할 수 있음. (투표소 전체 현황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나. 선거인의 투표 편의 제공 방안

- 「선거법」 제R56-1조는 어떤 장애의 종류를 불구하고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과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대리 투표(vote par procuration)를 통해 장애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음. 48) (대리 투표 제도는 본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혹은 직업, 교육 연수 등의 이유로 부재한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1993년 7월 6일 n°93-894 법률(Loi n°93-894 du 6 juillet 1993)」에 의해 단순히 여가 혹은 바캉스 등을 이유로 대리 투표 신청이 가능해졌음)

46) 프랑스 내무부 - 투표소 설치 및 개표에 관한 내무부 방침 (검색 : 2014년 4월 20일)
<http://www.interieur.gouv.fr/Elections/Comment-voter/Fonctionnement-d-un-bureau-de-vote>

47) 파리 시청 - 투표소 검색 (투표소 총 869개)
<http://www.bdv.paris.fr/c04/jsp/site/Portal.jsp?page=pollingstationsearch> (검색 : 2014년 4월 20일)
 프랑스 정보 검색 사이트 Internaute.com - 전국 투표소 검색
<http://www.linternaute.com/ville/p-bureau-vote> (검색 : 2014년 4월 20일)

48) 대리 투표에 대해서는 선관위 해외통신원 보고서 김청진, ‘2013년-7호 :대리투표 제도’ 프랑스 편을 참조할 것.

- 투표 안내 도우미는 따로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참관인(최소 2인 이상)이 장애인 보조 및 안내를 돕고 있음. 선거법에 따라 참관인은 수당을 받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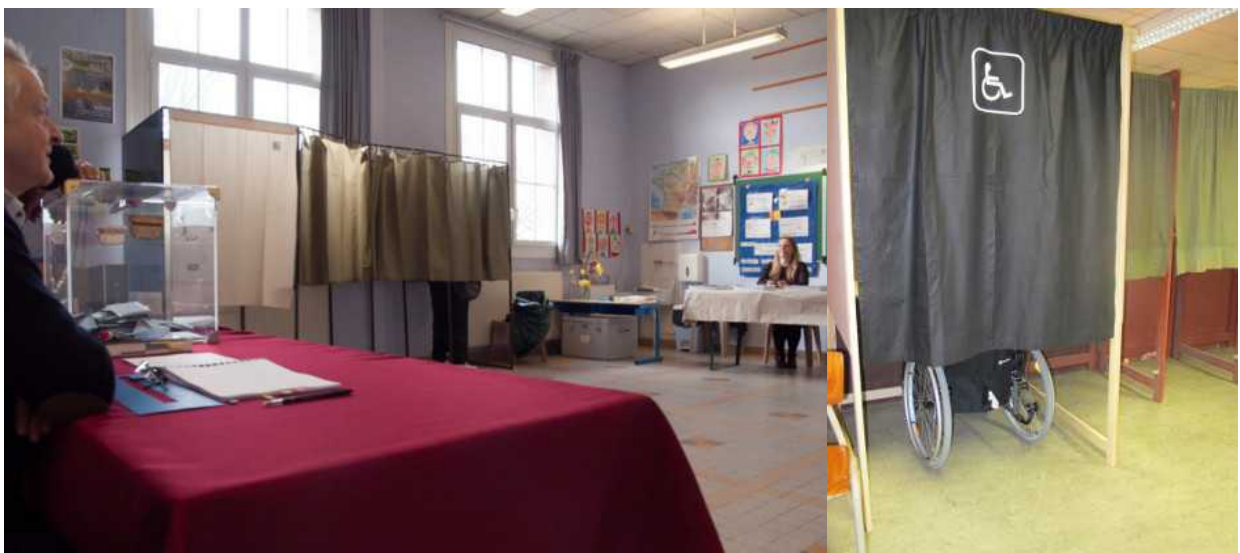
다. 투표소 변경에 따른 문제 사례와 대책

- 프랑스에서 투표소 변경 사례는 거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이 따로 제기되고 있지 않음.

(3) 투표장비 활용 실태

가. 기표대의 활용 실태 및 변천과정

- 「선거법」 R56-2조/3조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기표대(isoloir)가 최소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자가 투표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하여 개방형 기표대는 활용되고 있지 않음.



<프랑스 투표소>

나. 투표용지 작성방법

- 프랑스에서는 투표 용지에 표시를 하는 방식의 투표가 아니라, 모든 후보자의 투표 용지가 배부되고, 이 중에서 한 투표 용지를 선택하여 봉투에 봉합한 후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됨



<프랑스 투표 용지>

다. 투표함의 활용 실태 및 변천과정

- 「선거법」 제L63조에 따라 투표함은 투명해야하며 (6면 중 4면 이상), 보안을 위해 2개의 서로 다른 자물쇠로 잠금이 되어 있어야함. 자물쇠 하나는 투표소장이, 다른 하나는 배석자 중에 선출된 한 배석자가 보관함.
- 투명 투표함 사례
 -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대폭 낮추기 위해 투명 투표함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동으로 투표수가 집계되고 유권자들의 표가 얼마나 쌓이는지 바로 확인 할 수 있음.⁴⁹⁾

49) 편집자주



< 프랑스 투명 투표함 >

2. 개표소 운영 실태

(1) 관련 규정

- 개표소 운영 관련 법규 역시 「선거법(Code électoral)」에 규정되고 있음. 이중 개표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아래와 같음:

제. L65 조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서명날인명부의 서명자의수를 조사한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표를 실시한

다. 먼저 투표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봉투의 수를 확인한다. 봉투의 수가 서명자의 수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선거록에 기재한다. 투표소장은 출석한 선거인 중에서 글씨를 읽고 쓸 수 있는 개표참관인(scrutateur)을 지명하며, 그 개표참관인을 적어도 4

개 이상의 조(테이블)로 편성한다. 다수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 명부가 있는 경우에는 각 후보자의 개표 참관인은 가능한 각 개표 테이블마다 동수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표를 위한 조는 기표소의 수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봉투는 100매 단위로 묶어 그 다발을 하나의 봉투에 넣은 후 즉시 그 봉투를 봉하고 독립후보명부 또는 단일 후보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소장과 서로 다른 명부 또는 후보자를 대표하는 적어도 2인 이상의 참관인은 그 봉투에 서명을 한다.

각 테이블에서는 1인의 개표 참관인이 각 봉투에서 투표용지를 꺼내어 접혀진 것을 펴서 다른 개표참관인에게 넘겨준다. 투표용지를 건네 받은 개표참관인은 큰소리로 그 내용을 읽고, 적어도 2인 이상의 개표참관인은 준비한 명부에 투표용지에 기표된 후보자 성명을 기록한다. 하나의 봉투에 2매 이상의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기표된 후보자 명부 또는 후보자의 성명이 서로 다른 때에는 그 투표는 무효로 하고, 동일한 명부 또는 후보자에 기표 되어 있는 때에는 1표로 계산한다. 백지 투표(bulletins blancs)는 별도로 계산되며 선거명부에 첨부된다. 백지 투표는 유효표로 계산되지 않으나, 선거 결과에서 특별히 표시된다. 아무런 투표용지가 들어가지 않은 봉투는 백지 투표에 포함된다.

투표기가 설치되어 있는 투표소인 경우 투표소장은 투표가 종료된 직후 각 명부 또는 각 후보자 별로 획득한 투표수, 그리고 백지투표수의 합계가 계산상에 나타나 보이도록 하여 투표소의 구성원, 참관인 및 출석한 선거인에 의하여 낭독될 수 있도록 그 투표결과를 큰소리로 낭독하여야 한다.

Article L65

Dès la clôture du scrutin, il est procédé au dénombrement des émargements. Ensuite, le dépouillement se déroule de la manière suivante : l'urne est ouverte et le nombre des enveloppes est vérifié. Si ce nombre est plus grand ou moindre que celui des émargements, il en est fait mention au procès-verbal. Le bureau désigne parmi les électeurs présents un certain nombre de scrutateurs sachant lire et écrire, lesquels se divisent par tables de quatre au moins. Si plusieurs candidats ou plusieurs listes sont en présence, il leur est permis de désigner respectivement les scrutateurs, lesquels doivent être répartis également autant que possible par chaque table de dépouillement. Le nombre de tables ne peut être supérieur au nombre d'isoloirs.

Les enveloppes contenant les bulletins sont regroupées par paquet de 100. Ces paquets sont introduits dans des enveloppes spécialement réservées à cet effet. Dès l'introduction d'un paquet de 100 bulletins, l'enveloppe est cachetée et y sont apposées les signatures du président du bureau de vote et d'au moins deux assesseurs représentant, sauf liste ou candidat unique, des listes ou des candidats différents.

A chaque table, l'un des scrutateurs extrait le bulletin de chaque enveloppe et le passe déplié à un autre scrutateur ; celui-ci le lit à haute voix ; les noms portés sur les bulletins sont relevés par deux scrutateurs au moins sur des listes préparées à cet effet. Si une enveloppe contient plusieurs bulletins, le vote est nul quand les bulletins portent des listes et des noms différents. Les bulletins multiples ne comptent que pour un seul quand ils désignent la même liste ou le même candidat. Les bulletins blancs sont décomptés séparément et annexés au procès-verbal. Ils n'entrent pas en compte pour la détermination des suffrages exprimés, mais il en est fait spécialement mention dans les résultats des scrutins. Une enveloppe ne contenant aucun bulletin est

assimilée à un bulletin blanc.

Dès la clôture du scrutin, il est procédé au dénombrement des émargements. Ensuite, le dépouillement se déroule de la manière suivante : l'urne est ouverte et le nombre des enveloppes est vérifié. Si ce nombre est plus grand ou moindre que celui des émargements, il en est fait mention au procès-verbal. Le bureau désigne parmi les électeurs présents un certain nombre de scrutateurs sachant lire et écrire, lesquels se divisent par tables de quatre au moins. Si plusieurs candidats ou plusieurs listes sont en présence, il leur est permis de désigner respectivement les scrutateurs, lesquels doivent être répartis également autant que possible par chaque table de dépouillement. Le nombre de tables ne peut être supérieur au nombre d'isoloirs.

Les enveloppes contenant les bulletins sont regroupées par paquet de 100. Ces paquets sont introduits dans des enveloppes spécialement réservées à cet effet. Dès l'introduction d'un paquet de 100 bulletins, l'enveloppe est cachetée et y sont apposées les signatures du président du bureau de vote et d'au moins deux assesseurs représentant, sauf liste ou candidat unique, des listes ou des candidats différents.

A chaque table, l'un des scrutateurs extrait le bulletin de chaque enveloppe et le passe déplié à un autre scrutateur ; celui-ci le lit à haute voix ; les noms portés sur les bulletins sont relevés par deux scrutateurs au moins sur des listes préparées à cet effet. Si une enveloppe contient plusieurs bulletins, le vote est nul quand les bulletins portent des listes et des noms différents. Les bulletins multiples ne comptent que pour un seul quand ils désignent la même liste ou le même candidat. Les bulletins blancs sont décomptés séparément et annexés au procès-verbal. Ils n'entrent pas en compte pour la détermination des suffrages exprimés, mais il en est fait spécialement mention dans les résultats des scrutins. Une enveloppe ne contenant aucun bulletin est assimilée à un bulletin blanc.

Dans les bureaux de vote dotés d'une machine à voter, le président, à la fin des opérations de vote, rend visibles les compteurs totalisant les suffrages obtenus par chaque liste ou chaque candidat ainsi que les votes blancs, de manière à en permettre la lecture par les membres du bureau, les délégués des candidats et les électeurs présents. Le président donne lecture à haute voix des résultats qui sont aussitôt enregistrés par le secrétaire.

Dans les bureaux de vote dotés d'une machine à voter, le président, à la fin des opérations de vote, rend visibles les compteurs totalisant les suffrages obtenus par chaque liste ou chaque candidat ainsi que les votes blancs, de manière à en permettre la lecture par les membres du bureau, les délégués des candidats et les électeurs présents. Le président donne lecture à haute voix des résultats qui sont aussitôt enregistrés par le secrétaire.

제 R63 조

개표는 서명날인명부의 서명자의 수를 집계한 후 즉시 개시한다. 개표는 중단 없이 계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표용 테이블은 선거인이 그 둘레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Article R63

Le dépouillement suit immédiatement le dénombrement des émargements. Il doit être

conduit sans désespérer jusqu'à son achèvement complet.

Les tables sur lesquelles s'effectue le dépouillement sont disposées de telle sorte que les électeurs puissent circuler autour.

제 R64 조

개표는 투표소직원의 감시아래 개표참관인(scrutateur)이 실시한다.

개표참관인의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투표소직원이 이에 참가한다.

Article R64

Le dépouillement est opéré par des scrutateurs sous la surveillance des membres du bureau.

A défaut de scrutateurs en nombre suffisant, le bureau de vote peut y participer.

제 R65 조

선거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입후보한 후보자나 후보자명부가 지명한 개표참관인 또는 제 R47조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은 출석한 선거인 중에서 지명한다. 대리인도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다. 개표참관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은 투표가 종료되기 1시간 전까지 투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표참관인은 각 후보자나 명부의 개표참관인의 감시아래 투표용지의 호명 및 숫자의 기록 등과 같은 개표행위를 위한 탁자에 배치된다.

Article R65

Les scrutateurs désignés,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65, par les candidats ou mandataires des listes en présence ou par les délégués prévus à l'article R. 47, sont pris parmi les électeurs présents ; les délégués peuvent être également scrutateurs. Leurs nom, prénoms et date de naissance sont communiqués au président du bureau au moins une heure avant la clôture du scrutin. Ces scrutateurs sont affectés aux tables de dépouillement de telle sorte que la lecture des bulletins et l'inscription des suffrages soient, autant que possible, contrôlées simultanément par un scrutateur de chaque candidat ou de chaque liste.

제 R65-1 조

선거용 봉투는 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매씩 파속하고 100매 미만의 잔여투표봉투는 따로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하고 그 매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투표소장은 특정봉투를 각 투표용 테이블에 배분한다.

개표참관인은 특정봉투가 법 제65조제2항에 일치하는가를 확인한 다음 그 봉투를 개봉하여 선거용 봉투를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Article R65-1

Si à la fin du regroupement des enveloppes électorales par paquets de cent prévu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L. 65, le bureau constate qu'il reste des enveloppes électorales en nombre inférieur à cent, il introduit ces enveloppes dans une enveloppe de centaine qui doit porter, outre les signatures énumérées audit alinéa, la mention du nombre des enveloppes électorales qu'elle contient.

Le président répartit entre les diverses tables de dépouillement les enveloppes de centaine.

Après avoir vérifié que les enveloppes de centaine sont conformes aux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L. 65, les scrutateurs les ouvrent, en extraient les enveloppes électorales et procèdent comme il est dit au troisième alinéa dudit article.

제 R66 조

개표참관인은 낭독 및 계표가 종료된 후에 유효성여부가 의심스럽거나 선거인 또는 후보자의 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한 투표용지, 선거용 봉투 및 특정봉투를 서명한 점검표와 함께 집계소에 제출한다.

Article R66

Une fois les opérations de lecture et de pointage terminées, les scrutateurs remettent au bureau les feuilles de pointage signées par eux, en même temps que les bulletins, enveloppes électorales et enveloppes de centaine dont la régularité leur a paru douteuse, ou a été contestée par des électeurs ou par les délégués des candidats

제 R66-1 조

투표기가 설치되어 있는 투표소에서는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가 종료된 직후에 계표를 실시한다. 그 계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개표와 같다.

Article R66-1

Dans les bureaux de vote dotés d'une machine à voter, il est procédé au dénombrement des suffrages immédiatement après la clôture du scrutin,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prévues par le dernier alinéa de l'article L. 65. Ce dénombrement est assimilé au dépouillement du scrutin pour l'application du présent code.

제 R68 조

이의신청 및 투표소의 결정의 근거자료로 제출된 문서 및 계표 점검표 등은 이를 선거록에 합철한다.

현행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록에 첨부하여야 하는 투표용지 이외의 투표 용지는 선거인의 입회하에 파기한다.

Article R68

Les pièces fournies à l'appui des réclamations et des décisions prises par le bureau, ainsi que les feuilles de pointage sont jointes au procès-verbal.

Les bulletins autres que ceux qui, en application de la législation en vigueur, doivent être annexés au procès-verbal sont détruits en présence des électeurs.

제 R69 조

선거구가 다수의 투표소로 분할되어 있는 때에는 투표소별로 개표를 실시하고, 제 R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록을 작성한다. 각 투표소장 및 직원은 2부의 선거록 및 그 부속서류를 다른 투표소장의 입회하에 중앙집계소를 구성하여 총개표사무를 담당하는 제1투표소에 송부한다.

각 투표소에서 결정된 결과 및 그 부속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제1투표소는 선거인의 입회하에 요약선거록 부분 2부를 작성한다. 요약선거록 부분에는 중앙집계소 직원, 후보자 또는 후보자명부가 정식으로 지명한 대리인 및 다른 투표소장이 이에 서명한다.

중앙집계소 투표소장은 총개표 결과를 공표하고, 시장은 이를 즉시 게시한다.

Article R69

Lorsque les électeurs de la commune sont répartis en plusieurs bureaux de vote, le dépouillement du scrutin est d'abord opéré par bureau et les procès-verbaux sont établis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R. 67. Le président et les membres de chaque bureau remettent ensuite les deux exemplaires du procès-verbal et les annexes au bureau centralisateur et chargé d'opérer le recensement général des votes en présence des présidents des autres bureaux.

Les résultats arrêtés par chaque bureau et les pièces annexes ne peuvent en aucun cas être modifiés.

Un procès-verbal récapitulatif est établi en double exemplaire en présence des électeurs. Il est signé par les membres du bureau centralisateur, les délégués des candidats ou des listes dûment habilités auprès de celui-ci et les présidents des autres bureaux.

Le résultat est alors proclamé publiquement par le président du bureau centralisateur et affiché aussitôt par les soins du maire.

제 R70 조

꼬핀의 각 투표소에서 작성한 모든 선거록의 사본 1부는 시청에 보관한다.

선거인은 그 이의신청에 의하여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록을 열람할 수 있다.

Article R70

Un exemplaire de tous les procès-verbaux établis dans les différents bureaux de vote de la commune reste déposé au secrétariat de la mairie.

Communication doit en être donnée à tout électeur requérant jusqu'à l'expiration des délais prescrits pour l'exercice des recours contre l'élection.

Article R71

Dès la fin des opérations électorales, les délégués des candidats ou des listes en présence ont priorité pour consulter les listes d'émargement déposées dans les conditions fixées à l'article L 68.

제 R71 조

후보자 또는 후보자명부의 대리인은 선거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명 날인 명부를 우선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2) 개표소 운영

- 「선거법 제R63조」에 의거하여, 개표는 투표소에서 서명날인명부의 서명자의 수를 집계한 후 즉시 개시되어 중단되지 않음. 개표는 투표

소 직원의 감시 아래 개표참관인(scrutateur)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표참관인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투표소직원이 참가할 수 있음.

- 「선거법」 제 R63조에 근거하여 개표용 테이블은 선거인이 그 둘레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개표장은 참관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됨.

(3) 개표방법 : 수작업 개표

- 전자 투표 기기⁵⁰⁾를 이용한 일부 꼬뮈를 제외하고는 개표는 모두 수작업을 통해서 진행됨.
- 「선거법」 제 R65조에 따라, 개표는 투표장에서 투표 종료 후 즉시 시작되며, 이후 개표 작업은 수작업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됨:
 - 1) 투표 참석한 선거인의 서명날인명부의 서명자수 확인
 - 2) 투표함 속의 봉투 개수 확인 및 누락된 봉투 개수 파악 (서명 숫자와 비교)
 - 3) 봉투 개봉 및 투표용지 확인 : 투표용지가 한 장씩 개봉될 때마다 개표참관인은 큰 목소리로 선택된 후보자 이름을 부르며, 이에 따라 개표 스코어 시트에 기입됨.
 - 4) 「선거법 제R67조」에 따라, 서기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입회 하에 선거록(procès-verbal)을 2부 작성하여 투표소 직원의 서명을 받게 되며, 또한 후보자 또는 후보자 명부

50) 현재 프랑스는 「선거법 57-1항」에 의거하여, 3,500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코뮌(commune)에 한해 시장이 전자투표 실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설치되는 전자 투표 기기는 내무부의 「투표 기기에 관한 기술 규정」(Règlement technique des machines à voter)에 따라 승인된 모델로 한정됨.

프랑스 전자 투표 기기 사용 현황에 대해서는 선관위 해외통신원 보고서 김청진, '2012년-4호 : '프랑스 전자투표'를 참조할 것.

의 대리인은 의무적으로 선거록 정·부분에 부서해야함. 투표소장은 선거록이 작성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투표소 내에서 그 내용을 생략 없이 게시함으로써 개표 작업은 종료됨.

- 「선거법 제R68조」에 근거하여, 선거구가 다수의 투표소로 분할된 경우 개표는 투표소별로 우선 실시되고 각각 선거록이 작성됨. 이때, 각 투표소장 및 직원은 다른 투표소장 입회 하에 중앙집계소를 구성하게 됨. 모든 투표소의 2부의 선거록 및 그 부속서류는 총개표 사무를 담당하는 제 1투표소로 송부되며, 제 1투표소에서는 모든 투표소의 선거록을 바탕으로 요약선거록 부분 2부를 작성함. 여기에는 중앙집계소 직원, 후보자 또는 후보자명부가 지명한 대리인 및 기타 투표소장이 서명을 해야 함. 개표가 완료되면 중앙집계소 소장은 선거결과를 공표하고, 시장은 즉시 이를 공고하게 됨.

(4) 개표의 공정성 확보방안

가. 개표 부정 의혹 사례

- 프랑스에서 개표 부정 사례는 거의 없음. 최근 가장 널리 알려진 개표 부정 스캔들로는 2008년 “양말 부정”사건이 있음. 2008년 페르피냥(Perpignan) 시장 선거 결선 투표의 개표 과정에서 제4 투표소장 조지 가르시아(Georges Garcia)가 양말 및 주머니 속에 UMP소속 장-폴 알뒤이(Jean-Paul Alduy) 후보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었음. 2011년 11월 21일 경범죄법원(Tribunal correctionnel)은 가르시아에게 집행 유예 1년, 3000년 유로 벌금 및 3년간 공민권 박탈(privation des droits civiques)을 판결했음.

나. 개표부정 의혹제기 방지 대책

- 「선거법 제L65조」에 따르면,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서명날인명부의 서명자 수를 조사하고, 투표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봉투의 수를 확인함. 이후 투표소장은 출석한 선거인 가운데 글씨를 읽고 쓸 수 있는 개표참관인(scrutateur)을 지명함. 이 때, 개표참관인은 적어도 4개 이상의 조로 편성되어야 하며, 다수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 명부가 있는 경우, 각 후보자의 개표참관인은 가능한 한 각 개표 테이블에 동수로 배치되어야 함. 또한 개표를 위한 조는 기표소 수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개표작업은 모든 선거인이 관람 가능하며,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 투표함은 2개의 서로 다른 자물쇠로 잠겨 있음. 투표소장은 투표소 및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할 모든 권한을 가지며, 경찰 및 군지도관은 투표소장의 요구에 따라 투표장 및 개표소 질서를 유지함.



독 일

독일 연구관 : 이승현

1. 투표소 운영 실태

(1) 관련 규정

- 투표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연방선거법 제31조 내지 제35조」 및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2) 투표소 운영

가. 투표소 설치 현황

- 투표소의 설치하는 주체는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이 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투표소는 가능한 한 각 자치단체 행정청의 건물 내에 설치하도록 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독일의 경우 투표소 설치에 있어 민간시설 이용과 관련한 규정은 없음.
 - 투표소 설치에 관하여 배치되는 층수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정한 규정은 없으나 장애인과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가능한 한 선거에 참여하기 쉬운 장소로 선택되고 설비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연방선거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연방의회선거법 시행령」

제46조 투표소

제1항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각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한다. 가능한 경우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그 관청의 건물 내에 투표소를 설치한다. 투표소는 모든 선거권자 특히 장애인과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가능한 한 선거에 참여하기 쉬운 장소로 선택하고 선거에 참여하기 쉽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투표소에 장애물이 없음을 적절한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BWO」

§ 46 Wahlräume

(1) Die Gemeindebehörde bestimmt für jeden Wahlbezirk einen Wahlraum. Soweit möglich, stellen die Gemeinden Wahlräume in Gemeindegebäuden zur Verfügung. Die Wahlräume sollen nach den örtlichen Verhältnissen so ausgewählt und eingerichtet werden, dass allen Wahlberechtigten, insbesondere Behinderten und anderen Menschen mit Mobilitätsbeeinträchtigung, die Teilnahme an der Wahl möglichst erleichtert wird. Die Gemeindebehörden teilen frühzeitig und in geeigneter Weise mit, welche Wahlräume barrierefrei sind.

(이하 생략)

- 투표구(Wahlbezirk)는 2500명 미만에 하나의 투표구를 두는 것으로 하며, 선거구가 그 이상인 경우에는 투표구를 나누어 투표구를 설치(「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각 자치단체 내에 투표구를 몇 개로 분할할지는 각 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름(「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투표구는 모든 선거권자가 선거참여에 가급적 용이하도록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투표구를 분할함에 있어 유권자 수의 분배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하나의 투표구에는 2500명 이상의 유권자가 분포하여서도 안 되고, 반대로 너무 적은 수의 유권자만이 분포하여 개별 투표자들이 투표 내용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여서도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모든 투표구에는 해당 지역 관할 관청이 하나 이상의 투표소 설치(「연방선거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투표소의 설치는 가능한 행정청의 건물 내에 설치하도록 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선거인 명부를 분철할 정도로 큰 투표구의 경우 서로 다른 건물이나 같은 건물 내의 다른 공간 또는 한 투표소 내의 서로 다른 책상에서 동시에 투표하도록 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투표소가 분리되는 경우 투표구 선거위원회는 각 투표소 별 또는 각 책상별로 설치되어야 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나. 투표소의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 제공 현황

- 투표소를 설치함에 있어 장애인과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가능한 한 선거에 참여하기 쉬운 장소로 선택되고 설비되도록 하여야 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장애인 또는 거동불편자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 별도로 지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설치된 투표소에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의 투표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음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연방선거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독일의 경우 투표소의 관리 및 질서유지는 투표구 선거위원회가 담당하며 별도의 투표안내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장애인 또는 문맹 등의 사유로 투표에 어려움이 있는 유권자는 투표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연방선거법 제33조 제2항」).

「연방의회선거법」

제33조 투표의 비밀보장

제1항 (생략)

제2항 문맹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투표용지에 기입하거나, 투표용지를 접거나 스스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할 수 없는 선거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WahlG」

§ 33 Wahrung des Wahlheimnisses

(1) (생략)

(2) Ein Wähler, der des Lesens unkundig ist oder der wegen einer körperlichen Beeinträchtigung gehindert ist, den Stimmzettel zu kennzeichnen, zu falten oder selbst in die Wahlurne zu werfen, kann sich der Hilfe einer anderen Person bedienen.

「연방의회선거법 시행령」

제12조 일반투표구

제1항 주민 수 2,500명 이하의 자치단체는 통상 1개의 투표구로 이루어진다. 그보다 규모가 큰 자치단체는 여러 개의 투표구로 분할한다.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설치될 투표구의 수를 정한다.

제2항 투표구는 모든 선거권자가 선거참여에 가급적 용이하도록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구획되어야 한다. 어떠한 투표구도 주민 수 2,500명 이상을 넘을 수 없다. 1

개 투표구의 선거권자는 각 투표자들의 투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적지 않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46조 투표소

제1항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각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한다. 가능한 경우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그 관청의 건물 내에 투표소를 설치한다. 투표소는 모든 선거권자 특히 장애인과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가능한 한 선거에 참여하기 쉬운 장소로 선택하고 선거에 참여하기 쉽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투표소에 장애물이 없음을 적절한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선거인명부를 분철하여야 할 정도로 구역이 큰 투표구는 서로 다른 건물이나 같은 건물 내의 서로 다른 공간 또는 한 투표소의 서로 다른 책상에서 동시에 투표할 수 있다. 각 투표소 또는 책상별로 투표구 선거위원회가 설치된다. 여러 개의 투표구 선거위원회가 1개의 투표소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이 투표소의 정숙 및 질서유지를 담당할 투표구 선거위원회를 결정한다.

「BWO」

§ 12 Allgemeine Wahlbezirke

(1) Gemeinden mit nicht mehr als 2.500 Einwohnern bilden in der Regel einen Wahlbezirk. Größere Gemeinden werden in mehrere Wahlbezirke eingeteilt. Die Gemeindebehörde bestimmt, welche Wahlbezirke zu bilden sind.

(2) Die Wahlbezirke sollen nach den örtlichen Verhältnissen so abgegrenzt werden, dass allen Wahlberechtigten die Teilnahme an der Wahl möglichst erleichtert wird. Kein Wahlbezirk soll mehr als 2.500 Einwohner umfassen. Die Zahl der Wahlberechtigten eines Wahlbezirks darf nicht so gering sein, dass erkennbar wird, wie einzelne Wahlberechtigte gewählt haben.

(이하 생략)

§ 46 Wahlräume

(1) Die Gemeindebehörde bestimmt für jeden Wahlbezirk einen Wahlraum. Soweit möglich, stellen die Gemeinden Wahlräume in Gemeindegebäuden zur Verfügung. Die Wahlräume sollen nach den örtlichen Verhältnissen so ausgewählt und eingerichtet werden, dass allen Wahlberechtigten, insbesondere Behinderten und anderen Menschen mit Mobilitätsbeeinträchtigung, die Teilnahme an der Wahl möglichst erleichtert wird. Die Gemeindebehörden teilen frühzeitig und in geeigneter Weise mit, welche Wahlräume barrierefrei sind.

(2) In größeren Wahlbezirken, in denen sich die Wählerverzeichnisse teilen lassen, kann gleichzeitig in verschiedenen Gebäuden oder in verschiedenen Räumen desselben Gebäudes oder an verschiedenen Tischen des Wahlraumes gewählt werden. Für jeden Wahlraum oder Tisch wird ein Wahlvorstand gebildet. Sind mehrere Wahlvorstände in einem Wahlraum tätig, so bestimmt die Gemeindebehörde, welcher Vorstand für Ruhe und Ordnung im Wahlraum sorgt.

다. 투표소 잦은 변경에 따른 문제 사례와 대책

- 독일의 경우 최근 선거에서 투표소의 변경이 문제된 사례는 없음.
- 투표소 변경과 관련한 안내방법 및 대책에 대해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투표소의 설치를 담당하는 해당 지역의 관할관청이 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해석됨.
- 투표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문제 사례와 대책은 보고된 바 없음.

라. 투표장비 활용 실태

- 기표대(Wahlzelle 또는 Wahlkabine)에 관한 사항은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기표대의 형태 및 규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형태여야 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 각 기표소마다 필기구를 비치하여야 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사진-1> 2013년 사용된 기표대 (출처: 타게스샤우(Tagesschau) 지)



<사진-2> 2013년 사용된 기표대 (출처: n24 지)

- 개방형 기표대의 활용과 관련한 규정은 없음.
- 기표시의 비밀보장을 위해 (사진-2)와 같이 커튼을 부착하기도 하지만 법률로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

「연방의회선거법 시행령」

제50조 기표소

제1항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각 투표소마다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비밀로 기표하여 투표용 봉투에 넣을 수 있도록 1개 또는 여러 개의 기표소를 책상과 함께 설치한다. 기표소는 투표구 선거위원회의 책상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2항 기표소에는 필기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BWO」

§ 50 Wahlzellen

(1) In jedem Wahlraum richtet die Gemeindebehörde eine Wahlkabine oder mehrere Wahlkabinen mit Tischen ein, in denen der Wähler seinen Stimmzettel unbeobachtet kennzeichnen und falten kann. Die Wahlkabinen müssen vom Tisch des Wahlvorstandes aus überblickt werden können. Als Wahlkabine kann auch ein nur durch den Wahlraum zugänglicher Nebenraum dienen, wenn dessen Eingang vom Tisch des Wahlvorstandes aus überblickt werden kann.

(2) In der Wahlkabine soll ein Schreibstift bereitliegen.

마. 투표함의 활용 실태

- 투표함은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의 책임으로 설치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 투표함은 덮개로 덮여 있어야 하며, 규격은 높이 90cm, 각 너비는 최소 35cm 이상이어야 하고, 투표용지의 투입구의 너비는 2cm를 넘지 않아야 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 특별투표구나 이동투표구의 경우에는 시행령 상의 규격보다 소형의 투표함이 사용될 수 있음(「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 투표함의 재질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투표함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투표함이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선거법 제33조 제1항」), 이를 위해 내부가 비치는 투명 투표함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투표함의 비밀 보장을 위해 시건할 수 있어야 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 투표함의 재질이나 재사용 여부 및 보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조달 및 설치의 책임은 각 자치단체 행정청에게 있음.



<사진-3> 2005년 사용된 투표함 (출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faz) 지)



<사진-4> 2013년 사용된 투표함 (출처: 함부르거 아벤트블라트(Hamburger Abendblatt) 지)

「연방의회선거법」

제33조 투표의 비밀보장

제1항 투표자가 투표용지에 타인이 알지 못하게 기표하여 접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의 투입시에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투표함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BWahlG」

§ 33 Wahrung des Wahlheimnisses

(1) Es sind Vorkehrungen dafür zu treffen, daß der Wähler den Stimmzettel unbeobachtet kennzeichnen und falten kann. Für die Aufnahme der Stimmzettel sind Wahlurnen zu verwenden, die die Wahrung des Wahlheimnisses sicherstellen.

(이하 생략)

「연방의회선거법 시행령」

제51조 투표함

제1항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필요한 투표함을 준비한다.

제2항 투표함은 덮개로 덮여 있어야 한다. 투표함의 내부 높이는 원칙적으로 90cm, 각 벽면의 간격은 최소한 35cm이어야 한다. 투표함의 뚜껑에는 2cm를 넘지 않는 넓이의 투입구가 있어야 한다. 투표함은 자물쇠로 잠글 수 있어야 한다.

제3항 특별투표구 또는 이동투표구 선거위원회의 투표에는 소형의 투표함이 사용될 수 있다.

「BWO」

§ 51 Wahlurnen

(1) Die Gemeindebehörde sorgt für die erforderlichen Wahlurn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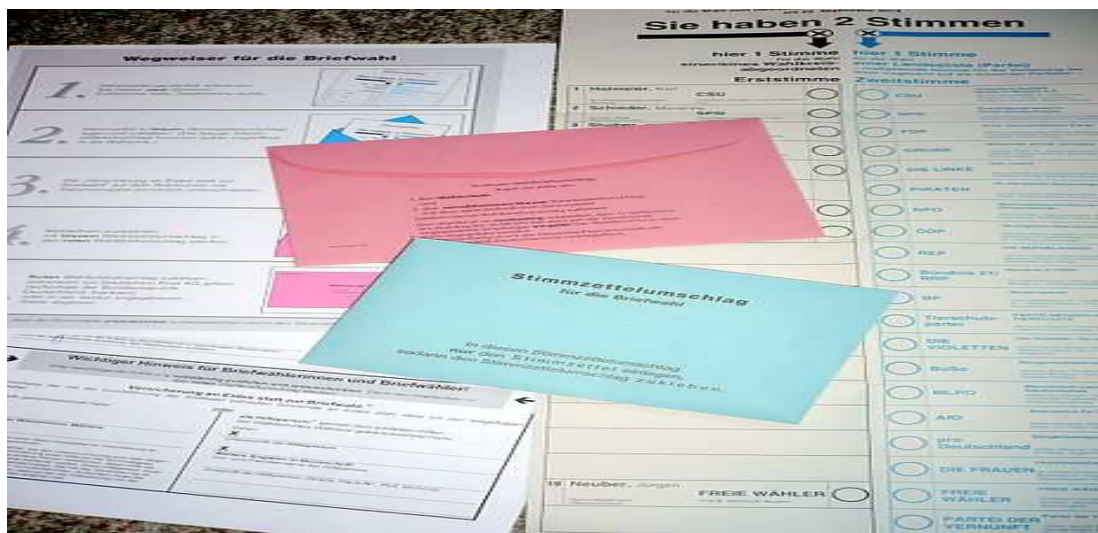
(2) Die Wahlurne muss mit einem Deckel versehen sein. Ihre innere Höhe soll in der Regel 90 cm, der Abstand jeder Wand von der gegenüberliegenden mindestens 35 cm

betragen. Im Deckel muss die Wahlurne einen Spalt haben, der nicht weiter als 2 cm sein darf. Sie muss verschließbar sein.

(3) Für die Stimmabgabe in Sonderwahlbezirken und vor einem beweglichen Wahlvorstand können kleinere Wahlurnen verwendet werden.

바. 투표용지 작성방법

- 독일은 각 선거구의 연방하원의원 선출을 위한 직접투표인 제1투표와 비례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명부 투표인 제2투표가 하나의 투표용지에 기재됨.
- 제1투표의 후보자 기재순서는 제2투표인 정당명부 순서에 .
- 제2투표인 정당명부의 기재순서는 최근 연방하원선거에서 정당이 얻은 제2투표의 득표수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전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의 경우 알파벳 순서에 의하여 기재됨(「연방선거법 제30조 제3항」).



<사진-5> 2013년 연방하원선거 투표용지(출처: 위키피디아(Wikipedia))

GRÜNE BÜNDNIS 90 / DIE GRÜNEN	☐
DIE LINKE DIE LINKE	☐
PIRATE! Piratenpartei Deutschland	☐
NPD	☐

<사진-6> 2013년 연방하원선거 투표용지(출처: 연방선거관리위원회(Bundeswahlleiter))

-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내용은 1차 투표(선거구 직접선거)의 경우 입
후보자 성명, 허가된 후보자 설명, 정당명(축약명으로 기재 가능)이,
2차 투표(정당명부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명(축약기재 가능) 및 비
례순위 5번까지의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가 기재됨(「연방선거법 제
30조 제2항」 및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 1차 투표(선거구 직접선거) 후보자 기재순위는 정당소속인 경우 정당
명부의 순위에 따르며, 정당소속이 아닌 경우 알파벳 순으로 기재함
(「연방선거법 제30조 제3항」).
- 2차 투표(정당명부 비례대표) 정당 기재순위는 직전 선거의 정당명
부선거에서 얻은 득표 순위에 따르며, 직전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은 알파벳 순으로 기재함(「연방선거법 제30조 제3항」).

- 투표용지 규격은 최소 가로 21cm, 세로 29.7cm(A4)의 흰색종이에 인쇄되며, 1차 투표(선거구 직접선거)는 검은색으로 2차 투표(정당 명부 비례대표)는 파란색으로 인쇄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 모든 투표구의 투표용지는 동일한 색상 및 지질로 작성되어야 하여야 함(「연방선거법 제30조 제3항」).
- 연방하원선거에서 투표구별 순환배열 방식은 사용되지 않음.
- 투표구별 순환배열방식이 사용되지 않아 투표용지 기호효과의 방지 효과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음.
- 투표구별 순환배열방식이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확인할 수 없음.

「연방의회선거법」

제30조 투표용지

제1항 투표용지 및 우편투표(제36조제1항)를 위한 봉투는 공적으로 제작된다.

제2항 투표용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선거구선거에 있어서는 승인된 선거구후보자 추천서의 후보자 성명, 정당에 의한 선거구후보자 추천의 경우 정당의 명칭, 정당이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약칭, 기타 선거구별 후보자추천의 경우에는 그 표식어
2. 주후보자 명부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의 명칭, 정당의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약칭 및 승인된 주후보자명부 중 상위 5명의 후보자 성명

제3항 정당들의 주후보자명부 순위는 최근 연방하원선거에서 얻은 제2표의 득표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 외의 주후보자명부의 순위는 정당명 알파벳 순위에 의한다. 선거구 선거후보자의 순위는 동일 정당의 주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그 외의 선거후보자의 순위는 정당의 명칭 또는 약칭의 알파벳 순위에 의한다.

「BWahlG」

§ 30 Stimmzettel

- (1) Die Stimmzettel und die zugehörigen Umschläge für die Briefwahl (§ 36 Abs. 1) werden amtlich hergestellt.
- (2) Der Stimmzettel enthält
 1. für die Wahl in den Wahlkreisen die Namen der Bewerber der zugelassenen Kreiswahlvorschläge, bei Kreiswahlvorschlägen von Parteien außerdem die Namen der Parteien und, sofern sie eine Kurzbezeichnung verwenden, auch diese, bei anderen Kreiswahlvorschlägen außerdem das Kennwort,
 2. für die Wahl nach Landeslisten die Namen der Parteien und, sofern sie eine Kurzbezeichnung verwenden, auch diese, sowie die Namen der ersten fünf Bewerber der zugelassenen Landeslisten.
- (3) Die Reihenfolge der Landeslisten von Parteien richtet sich nach der Zahl der Zweitstimmen, die sie bei der letzten Bundestagswahl im Land erreicht haben. Die übrigen Landeslisten schließen sich in alphabetischer Reihenfolge der Namen der Parteien an. Die Reihenfolge der Kreiswahlvorschläge richtet sich nach der Reihenfolge der entsprechenden Landeslisten. Sonstige Kreiswahlvorschläge schließen sich in alphabetischer Reihenfolge der Namen der Parteien oder der Kennwörter an.

「연방의회선거법 시행령」

제45조 투표용지, 우편투표용지 봉투

제1항 투표용지는 최소 21 x 29.7 cm(DIN A4) 이상 크기의 백색 또는 백색에 가까운 용지로 한다. 용지는 선거인이 표시하고 접은 후에 다른 사람이 선거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별지 제26호의 양식에 따라 각각 순서대로 그리고 공고번호를 붙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제시되어야 한다.

1. 선거구선거의 경우에는 흑색 인쇄지에 허가된 선거구후보추천서를, 후보자의 성명,

직업이나 직위 그리고 주소(주 거주지) 및 정당의 이름을, 정당이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약어도 함께 표시하며 그 밖의 선거구후보추천(연방선거법 제20조 제3항)의 경우에는 표식어를, 그리고 각각 후보자의 이름 오른쪽에는 구별을 위해 선거구를 표시하여 첨부한다. 제38조 제4문에 따른 입증 시에는 주소(주 거주지)에 같음하여 연락가능한 주소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2. 주후보자명부선거의 경우에는 청색으로 인쇄하며, 승인된 주후보자명부에는 정당의 명칭(정당의 약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칭도 포함), 명부 내의 1위에서 5위까지의 후보자 성명을 인쇄하고, 정당명칭의 좌측에는 둥근 기표란을 둔다.

각 선거구후보자와 주후보자명부는 지면상 구분된다. 투표용지는 각 투표구마다 동일한 색깔과 지질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BWO」

§ 45 Stimmzettel, Umschläge für die Briefwahl

(1) Der Stimmzettel ist mindestens 21 x 29,7 cm (DIN A4) groß und aus weißem oder weißlichem Papier. Das Papier muss so beschaffen sein, dass nach Kennzeichnung und Faltung durch den Wähler andere Personen nicht erkennen können, wie er gewählt hat. Der Stimmzettel enthält nach dem Muster der Anlage 26 je in der Reihenfolge und unter der Nummer ihrer Bekanntmachung

1. für die Wahl im Wahlkreis in schwarzem Druck die zugelassenen Kreiswahlvorschläge unter Angabe des Familiennamens, Vornamens, Berufs oder Standes und des Wohnortes (Hauptwohnung) des Bewerbers sowie des Namens der Partei, sofern sie eine Kurzbezeichnung verwendet, auch dieser, oder des Kennworts bei anderen Kreiswahlvorschlägen (§ 20 Abs. 3 des Bundeswahlgesetzes) und rechts von dem Namen jedes Bewerbers einen Kreis für die Kennzeichnung; bei einem Nachweis nach § 38 Satz 4 ist anstelle des Wohnortes (Hauptwohnung) der Ort der

Erreichbarkeitsanschrift anzugeben,

2. für die Wahl nach Landeslisten in blauem Druck die zugelassenen Landeslisten unter Angabe des Namens der Partei, sofern sie eine Kurzbezeichnung verwendet, auch dieser, sowie der Familiennamen und Vornamen der ersten fünf Bewerber und links von der Parteibezeichnung einen Kreis für die Kennzeichnung.

Zusätzlich kann ein eingetragener Ordens- oder Künstlurname (§ 5 Absatz 2 Nummer 12 des Personalausweisgesetzes, § 4 Absatz 1 Nummer 4 des Passgesetzes) angegeben werden. Jeder Wahlkreisbewerber und jede Landesliste erhält ein abgegrenztes Feld. Die Stimmzettel müssen in jedem Wahlbezirk von gleicher Farbe und Beschaffenheit sein.

(이하 생략)

2. 개표소 운영 실태

가. 관련 규정

- 개표소의 설치 요건 및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각 투표구 선거위원회가 해당 투표구에서 투표된 제1투표 및 제2투표의 득표수를 확정하게 됨(「연방의회선거법 제37조」).
- 각 투표구에서의 선거결과 산출은 투표의 종료와 함께 이루어짐(「연방의회선거법 시행령 제67조」).

「연방의회선거법」

제37조 투표구에 있어서의 선거결과의 확정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구선거위원회는 그 투표구에서 투표된 각 선거구후보자 및 주후보자명부별 득표수를 확정한다.

「BWahlG」

§ 37 Feststellung des Wahlergebnisses im Wahlbezirk

Nach Beendigung der Wahlhandlung stellt der Wahlvorstand fest, wieviel Stimmen im Wahlbezirk auf die einzelnen Kreiswahlvorschläge und Landeslisten abgegeben worden sind.

「연방의회선거법 시행령」

제67조 투표구에서의 선거결과의 산출 및 확정

투표구 선거위원회는 투표에 이어서 곧바로 투표구에서의 선거결과를 산출하고 다음 사항을 확정한다.(이하 생략)

「BWO」

§ 67 Ermittlung und Feststellung des Wahlergebnisses im Wahlbezirk

Im Anschluss an die Wahlhandlung ermittelt der Wahlvorstand ohne Unterbrechung das Wahlergebnis im Wahlbezirk und stellt fest

(이하 생략)

나. 개표소 운영

- 개표소의 운영은 투표구 선거위원장의 감독 하에 투표구 선거위원의 참여로 진행됨(「연방의회선거법 시행령 제69조」).
- 투표구 선거위원회는 투표구 선거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선거위원장으로부터 위촉된 3인 내지 7인의 선거권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됨(「연방선거법 제9조 제2항」).
- 개표용 장비의 사용 없이 수개표를 기준으로 개표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연방의회선거법 시행령 제69조」).

- 1차적인 투표지의 분류는 1차투표(직접선거) 및 2차투표(정당명부 비례대표)에 동일 정당에 기표한 투표용지, 1차투표(직접선거)와 2차투표(정당명부 비례대표)의 기표 정당이 동일하지 않은 투표용지 및 1차 또는 2차 투표 중 하나를 기입하지 않은 투표용지 및 전혀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의 3가지로 분류함(「연방의회선거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 이의가 제기된 투표용지가 담긴 투표용 봉투 및 여러 장의 투표용지가 투입된 투표용 봉투 등은 투표구 선거위원장이 지정한 1인의 위원이 분류하여 보관함(「연방의회선거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 분류된 투표용지는 2명씩 2개조로 구성된 투표구 선거위원회의 위원과 투표구 선거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상호 감시하에 검표 및 재검표 과정을 거침(「연방의회선거법 시행령 제69조 제4항 및 제5항」).
- 산출된 투표수는 서기가 투표록에 기재하고 투표구 선거위원장이 지정한 2인의 위원이 기재 사항을 심사하며, 투표구 선거위원 전원이 선거결과가 기재된 투표록에 서명하기 이전에 투표수의 재집계를 요구할 수 있음(「연방의회선거법 시행령 제69조 제7항」).

「연방의회선거법」

제9조 선거기관의 구성

제1항 (생략)

제2항 (생략)…투표구선거위원회는 투표구선거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그 직무대리인 그리고 선거위원장에 의해 위촉된 3인 내지 7인의 선거권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중간생략)…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당해 투표구에서 후보자를 낸 정당들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BWahlG」

§ 9 Bildung der Wahlorgane

(1) (생략)

(2) (생략)···Die Wahlvorstände bestehen aus dem Wahlvorsteher als Vorsitzendem, seinem Stellvertreter und weiteren drei bis sieben vom Wahlvorsteher berufenen Wahlberechtigten als Beisitzern···(중간 생략)···Bei Berufung der Beisitzer sind die in dem jeweiligen Bezirk vertretenen Parteien nach Möglichkeit zu berücksichtigen.

(이하 생략)

「연방의회선거법 시행령」

제69조 투표수의 계산

제1항 투표용 봉투, 투표기록란 표시, 선거증 등의 수를 계산한 후 여러 명의 위원은 투표구선거위원장의 감독하에 투표용 봉투를 개봉하여 투표용지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제1표와 제2표가 명백히 동일정당의 선거구후보자와 주후보자명부에 투표된 유효투표지를 주후보자명부를 기준으로 분류
2. 제1표와 제2표가 각각 명백히 상이한 정당 소속의 선거구후보자 및 주후보자명부에 투표된 유효투표지 및 제1표와 제2표 중 한쪽 투표만이 명백히 유효하게 기표되었으나 다른 한 표는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를 각각 분류
3. 빈 투표용 봉투와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별 분류

유효·무효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투표용 봉투와 투표지 및 여러 개의 투표지가 투입되어 있는 투표용 봉투 등은 따로 분류하여 투표구선거위원장이 지정하는 1인의 위원이 보관한다.

제2항 주후보자명부를 기준으로 분류된 투표지(제1항제1호)를 감시하는 위원은 각 종류별로 일부는 투표구선거위원장에게, 나머지는 그 직무대리인에게 인계한다. 이들이 맞게 분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각 종류별로 어느 선거구후보자와 어느 주후보자명부에 투표된 것인지를 큰 소리로 알린다. 투표지가 투표구선거위원장이거나 그 직무대리인에게 의혹을 불러일으킬 경우에 그 투표지는 제1항제2문에 따라 분류된 투표지에 첨부한다.

제3항 투표구선거위원장은 지정된 위원이 보관하고 있는 투표용 봉투와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제1항제3호)를 인계하여 검사한 후 투표구선거위원장은 그 투표는 모두 무효임을 선언한다.

제4항 그 다음에는, 투표구선거위원장이 각 2명씩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2개조의 위원은 투표구선거위원장과 그 직무대리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검사한 투표지를 상호 감시하에 집계하고, 각 후보자별 유효득표수 및 무효득표수를 계산한다. 그 수는 투표록에 중간집계로 기재한다.

제5항 다음 단계로 제1항제2호에 의하여 분류된 투표지 묶음을 감시하는 위원은 그 묶음을 투표구선거위원장에게 인계한다. 투표구선거위원장은 그 투표지를 우선 각 주후보자명부에 투표된 제2표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 투표지의 제2표가 어느 주후보자

명부에 투표되었는지를 큰 소리로 읽는다. 제1표만이 기표된 투표 지가 나올 경우, 투표구선거위원회장은 기표되지 않은 제2표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투표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투표구선거위원회장은 그 표를 제1항제2문에 의하여 분류된 투표지에 첨부한다. 그 다음에 투표구선거위원회장이 분류한 투표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투표구선거위원회장은 그 투표지를 각 선거구후보자에게 투표된 제1표를 기준으로 분류한 다음, 제2문 내지 제5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와 같이 집계된 투표수는 투표록에 중간집계로 기재한다.

제6항 마지막으로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완전히 분류된 투표지의 유·무효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다. 투표구선거위원회장은 그 결정을 구두로 공표하고, 유효표의 경우에는 그 투표가 어느 선거구후보자에게 또는 어느 주후보자명부에 투표되었는가를 알린다. 투표구선거위원회장은 그 표 모두가 또는 제1표 또는 제2표만이 유효 또는 무효로 선언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각 투표지의 뒷면에 기재하고 그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여기에서 집계된 투표수는 투표록에 중간집계로서 기재한다.

제7항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무효투표수와 각 후보자별 투표수는 서기가 투표록에 총집계한다. 투표구선거위원회장에 의하여 지정된 2명의 위원은 총집계를 심사한다. 투표구선거위원회의 구성원이 투표록에 서명하기 전에 투표수의 재집계를 요구할 경우, 투표수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집계하여야 한다. 그 재집계 사유는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항 투표구선거위원회장이 지정한 위원은 다음 사항을 종류별로 집계하고 그 감시하에 보관한다.

1. 제1표 및 제2표 또는 제1표에만 기표된 투표지로서, 제1표를 획득한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
2. 제2표에만 기표된 투표지
3. 빈 투표용 봉투와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
4. 이의가 제기된 투표용 봉투와 그 투표지,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 여러 개의 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용 봉투

「BWO」

§ 69 Zählung der Stimmen

(1) Nachdem die Stimmzettel sowie die Stimmabgabevermerke und die Wahlscheine gezählt worden sind, bilden mehrere Beisitzer unter Aufsicht des Wahlvorstehers folgende Stimmzettelstapel, die sie unter Aufsicht behalten:

1. nach Landeslisten getrennte Stapel mit den Stimmzetteln, auf denen die Erst- und Zweitstimme zweifelsfrei gültig für den Bewerber und die Landesliste derselben Partei abgegeben worden ist,
2. einen Stapel mit den Stimmzetteln, auf denen die Erst- und Zweitstimme zweifelsfrei gültig für Bewerber und Landeslisten verschiedener Träger von Wahlvorschlägen abgegeben worden ist, sowie mit den Stimmzetteln, auf denen nur die Erst- oder

Zweitstimme jeweils zweifelsfrei gültig und die andere Stimme nicht abgegeben worden ist,

3. einen Stapel mit den ungekennzeichneten Stimmzetteln.

Stimmzettel, die Anlass zu Bedenken geben, werden ausgesondert und von einem vom Wahlvorsteher hierzu bestimmten Beisitzer in Verwahrung genommen.

(2) Die Beisitzer, die die nach Landeslisten geordneten Stimmzettel (Absatz 1 Satz 1 Nr. 1) unter ihrer Aufsicht haben, übergeben die einzelnen Stapel nacheinander zu einem Teil dem Wahlvorsteher, zum anderen Teil seinem Stellvertreter. Diese prüfen, ob die Kennzeichnung der Stimmzettel eines jeden Stapels gleichlautet, und sagen zu jedem Stapel laut an, für welchen Bewerber und für welche Landesliste er Stimmen enthält. Gibt ein Stimmzettel dem Wahlvorsteher oder seinem Stellvertreter Anlass zu Bedenken, so fügen sie diesen den nach Absatz 1 Satz 2 ausgesonderten Stimmzetteln bei.

(3) Hierauf prüft der Wahlvorsteher die ungekennzeichneten Stimmzettel (Absatz 1 Satz 1 Nr. 3), die ihm hierzu von dem Beisitzer, der sie in Verwahrung hat, übergeben werden. Der Wahlvorsteher sagt an, dass hier beide Stimmen ungültig sind.

(4) Danach zählen je zwei vom Wahlvorsteher bestimmte Beisitzer nacheinander die vom Wahlvorsteher und seinem Stellvertreter nach den Absätzen 2 und 3 geprüften Stimmzettelstapel unter gegenseitiger Kontrolle durch und ermitteln die Zahl der für die einzelnen Wahlvorschläge abgegebenen gültigen Stimmen sowie die Zahl der ungültigen Stimmen. Die Zahlen werden als Zwischensummen in die Wahlniederschrift übertragen.

(5) Sodann übergibt der Beisitzer, der den nach Absatz 1 Satz 1 Nr. 2 gebildeten Stimmzettelstapel unter Aufsicht hat, diesen Stapel dem Wahlvorsteher. Der Wahlvorsteher legt die Stimmzettel zunächst getrennt nach Zweitstimmen für die einzelnen Landeslisten und liest bei jedem Stimmzettel laut vor, für welche Landesliste die Zweitstimme abgegeben worden ist. Bei den Stimmzetteln, auf denen nur die Erststimme abgegeben worden ist, sagt er an, dass die nicht abgegebene Zweitstimme ungültig ist. Gibt ein Stimmzettel dem Wahlvorsteher Anlass zu Bedenken, fügt er diesen den nach Absatz 1 Satz 2 ausgesonderten Stimmzetteln bei. Dann werden die vom Wahlvorsteher gebildeten Stapel entsprechend Absatz 4 gezählt. Anschließend

ordnet der Wahlvorsteher die Stimmzettel nach abgegebenen Erststimmen neu, und es wird entsprechend den Sätzen 2 bis 5 verfahren. Die jeweiligen Stimmenzahlen werden als Zwischensummen in die Wahlniederschrift übertragen.

(6) Zum Schluss entscheidet der Wahlvorstand über die Gültigkeit der Stimmen, die auf den ausgesonderten Stimmzetteln abgegeben worden sind. Der Wahlvorsteher gibt die Entscheidung mündlich bekannt und sagt bei gültigen Stimmen an, für welchen Bewerber oder für welche Landesliste die Stimme abgegeben worden ist. Er vermerkt auf der Rückseite jedes Stimmzettels, ob beide Stimmen oder nur die Erststimme oder nur die Zweitstimme für gültig oder ungültig erklärt worden sind und versieht die Stimmzettel mit fortlaufenden Nummern. Die jeweiligen Stimmenzahlen werden als Zwischensummen in die Wahlniederschrift übertragen.

(7) Die nach den Absätzen 4 bis 6 ermittelten Zahlen der ungültigen und für die einzelnen Wahlvorschläge abgegebenen Stimmen werden vom Schriftführer in der Wahlniederschrift zusammengezählt. Zwei vom Wahlvorsteher bestimmte Beisitzer überprüfen die Zusammenzählung. Beantragt ein Mitglied des Wahlvorstandes vor der Unterzeichnung der Wahlniederschrift eine erneute Zählung der Stimmen, so ist diese nach den Absätzen 1 bis 6 zu wiederholen. Die Gründe für die erneute Zählung sind in der Wahlniederschrift zu vermerken.

(8) Die vom Wahlvorsteher bestimmten Beisitzer sammeln

1. die Stimmzettel, auf denen die Erststimme und die Zweitstimme oder nur die Erststimme abgegeben worden sind, getrennt nach den Bewerbern, denen die Erststimme zugefallen ist,
 2. die Stimmzettel, auf denen nur die Zweitstimme abgegeben worden ist,
 3. die ungekennzeichneten Stimmzettel,
 4. die Stimmzettel, die Anlass zu Bedenken gegeben haben
- je für sich und behalten sie unter Aufsicht.

다. 개표장비

○ 개표시 기계장비, 전산조직 활용여부

- 개표는 투표구 선거위원회의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며 자동개수기의 사용과 관련한 규정은 없음.
- 별도의 개표소를 설치하여 대규모 개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2500명 이하의 투표구에서 1차 개표를 진행하여 확정된 결과를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연방의회선거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 집계된 투표수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전산장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연방의회선거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 개표관련 장비의 오작동으로 인해 문제가 된 사례 및 대책

- 개표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개표장비의 오작동과 관련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연방의회선거법 시행령」

제 71 조 (신속보고, 잠정적인 선거결과)

제1항 투표구선거위원장은 투표구에서 선거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에 보고한다.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모든 투표구의 선거결과를 집계하여 선거구선거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자치단체가 단일 투표구로 구성된 경우 투표구선거위원장은 선거결과를 선거구선거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주선거위원장은 관할선거구에 속하는 자치단체의 선거결과를 군청을 통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2항 선거결과에의 보고는 가장 빠른 방법(예 : 전화,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행하여야 한다. 선거결과에의 보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BWO」

§ 71 Schnellmeldungen, vorläufige Wahlergebnisse

- (1) Sobald das Wahlergebnis im Wahlbezirk festgestellt ist, meldet es der Wahlvorsteher der Gemeindebehörde, die die Wahlergebnisse aller Wahlbezirke der Gemeinde zusammenfasst und dem Kreiswahlleiter meldet. Ist in der Gemeinde nur ein Wahlbezirk gebildet, meldet der Wahlvorsteher das Wahlergebnis dem Kreiswahlleiter. Der Landeswahlleiter kann anordnen, dass die Wahlergebnisse in den kreisangehörigen Gemeinden über die Verwaltungsbehörde des Kreises gemeldet werden.
- (2) Die Meldung wird auf schnellstem Wege (z. B. telefonisch oder auf sonstigem elektronischen Wege) erstattet. Sie enthält die Zahlen
- (이하 생략)

라. 개표의 공정성 확보방안

○ 개표부정 의혹제기 사례

- 최근 선거에서 개표과정의 부정에 관한 의혹제기는 없었음.

○ 개표부정 의혹제기 방지대책

- 독일의 경우 별도의 개표참관인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 개표과정의 검표 및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구 선거위원장, 부위원장 및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2개 조의 검표위원이 상호 감시 하에 교차 진행함.
- 개표과정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개표결과가 기재된 투표록에 투표구 선거위원회 전원이 서명하기 이전에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음 (「연방의회선거법 시행령 제69조 제7항」).



일 본

일본 연구관 : 신여림

1. 투표소 운영 실태

(1)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운영의 주체는 시청, 구청 및 각 선거관리위원회이며, 투표소의 설치, 선거인에 대한 투표 및 투표소의 안내 등의 책임이 있음.
- 공직선거법 시행령에는 기표대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할 것과 투표함의 자물쇠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 39조

제 1항 투표소는 시청, 정촌의 사무소 또는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公職選挙法第39条

(投票所)

第1項投票所は、市役所、町村役場又は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が指定した場所に設ける。

「공직선거법시행령」

(투표소입장권 및 도착번호표 교부)

제 31조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 기일의 공표 또는 공시 일 이후 가능한 신속하게 선거인에게 투표소 입장권을 교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투표관리자는 투표소에 있어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표소의 입구에 있어서 선거인에게 도착번호표를 교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第三十一條 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特別の事情がない限り、選挙の期日の公示又は告示の日以後できるだけ速やかに選挙人に投票所入場券を交付す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投票管理者は、投票所における事務の処理の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場合においては、投票所の入口において選挙人に到着番号札を交付することができる。

(투표기재장소의 설치)

제 32조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있어서 선거인이 투표를 기재하는 장소에 대해서 타인이 그 투표인의 투표기재를 보는 것 또는 투표용지의 교환 그 외의 부정수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상응하는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投票記載の場所の設備)

第三十二條 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投票所において選挙人が投票の記載をする場所について、他人がその選挙人の投票の記載を見ること又は投票用紙の交換その他の不正の手段が用いられることが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相当の設備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투표함의 구조)

제 33조 투표함은 될 수 있는 한 견고한 구조를 하고, 그 위에 상부 뚜껑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자물쇠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投票箱の構造)

第三十三條 投票箱は、できるだけ堅固な構造とし、且つ、その上部のふたに各々異なつた

二以上の錠を設けなければならない。

(투표함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

제 34조 투표관리자는 선거인이 투표를 하기 전에 투표소 내에 있는 선거인의 앞에서 투표함을 열어 그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投票箱に何も入っていないことの確認)

第三十四條 投票管理者は、選挙人が投票をする前に、投票所内にいる選挙人の面前で投票箱を開き、その中に何も入っていないこと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투표소 운영

가. 투표소 설치 현황

○ 최근 3회의 참의원선거의 투표소, 개표소 개수⁵¹⁾

구 분	투표소	개표소
2007년	51, 742	2,011
2010년	50,314	1,913
2013년	48,777	1,903

○ 투표소는 학교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우선시되어, 민간 시설의 이용의 비율은 적음.

○ 단 젊은 층의 투표율 신장을 위해 투표소의 비밀 및 질서 유지가 확보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거인의 편의에 응해 민간시설 및 역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함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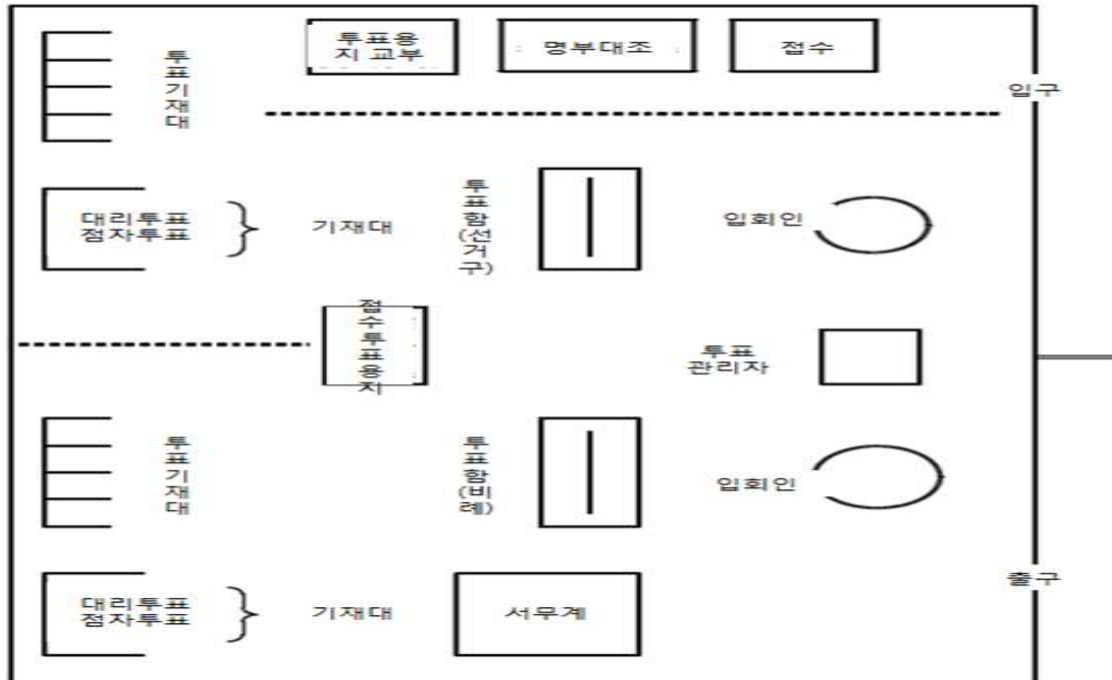
51)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senkyo/23sansokuhou/>

- 2010년 6월 각료합의 된 장애인제도 개혁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障害者制度改革の推進のための基本的な方向]에 기반, 투표에 있어서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및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도록(인적자원배치를 포함)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권고함.
- 2010년 참의원 선거 당시의 투표소 시설 조사결과, 기일전 투표소 총 4642개소 중 입구에 높이의 차이(段差)가 있는 곳 638개소, 그 중 높이 차이에 대해 조치가 취해진 곳 634개소. 또 투표장소가 입구와 동일한 층에 있지 않은 기일 전 투표소는 1054개소 중, 조치가 취해진 곳은 1052개소로 나타남.
- 동 선거의 투표소 총 50,311개소 중 입구에 높이 차이가 있는 곳 27,408개소, 그 중 조치가 취해진 곳은 27,393개소. 또 투표장소가 입구와 동일한 층에 있지 않은 투표소는 853개소, 그 중 조치가 취해진 곳은 847 개소. (취해진 조치는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된 건물의 선택, 슬로프 설치 등을 의미함⁵³⁾).

52) 참의원 ‘젊은층 투표율 향상을 위한 실책에 대한 질의서 2009년 7월 2일
<http://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syuisyo/171/syup/s171225.pdf>

53)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082983.pdf 참고
 투표소 내의 이동에 있어서 인적보조(도우미)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구체적인 채용정보 및 처우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을 수 없음

나. 투표소의 평면도 및 투표 순서



<그림 1 투표소의 평면도54)>

○ 투표순서

- ① 선거일 전에 투표소입장권이 선거인에게 도착
- ② 선거일 투표소에서 입장권을 갖고 접수(입장권이 없는 경우에도 투표는 가능), 선거인명부 확인 및 투표용지 교부
- ③ 기표
- ④ 투표함에 투표(선거구)
- ⑤ 투표용지 교부
- ⑥ 기표
- ⑦ 투표함에 투표(비례대표)

54) 총무성 홈페이지 참의원선거특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082968.pdf

다. 선거인의 투표편의 제공방안

○ 투표소 설치요건⁵⁵⁾

- ① 투표의 비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곳
- ②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장소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
- ③ 누구나 투표하기 쉬운 환경에 있는 곳

○ 2010년 22회 참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인의 편의를 위해

- ① 고령자 및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의 없는 2층 이상의 투표소는 지향 할 것
- ② 투표소 내 안내도 및 투표 순서 및 동선을 표시할 것
- ③ 돋보기 혹은 노안용 안경 등의 비치, 투표 기표대에 조명 설치 및 후보자명 부착 등을 권고함⁵⁶⁾.

○ 투표소가 멀리 있는 선거인을 위해 지자체에서 투표소까지의 순환 버스를 운영하기도 함⁵⁷⁾. 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동수단을 지원할 수 없음, (교통수단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원하는 시간에 투표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을 수 있음을 이유로 지원을 보류하기도 함⁵⁸⁾.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에 있어서

후쿠시마현 나미에정⁵⁹⁾:투표소까지의 무료 버스를 운영

토야마현 우오즈시⁶⁰⁾: 시내의 黒谷区、山女区、東蔵区、平沢区를 순환하는 무료버스를 운영

55) 시즈오카현 이즈시 홈페이지

https://www.city.ito.shizuoka.jp/shichou-koushitsu/html/shisei_monitor/tuusin_22nendo/hpg000006484.html

56) 총무성 홈페이지 참의원선거특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082968.pdf

57) 내각부 홈페이지 http://www8.cao.go.jp/shougai/suishin/kaikaku/s_kaigi/k_9/pdf/s4.pdf

58) 아사히신문 2010년 12월 6일 <http://www.asahi.com/senkyo/news/TKY201012050352.html>

라. 투표소 잦은 변경에 따른 문제 사례와 대책

- 투표소 변경을 알리는 방법으로는 투표소입장권에 투표소를 안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선전물 배포 등이 있음.
- 사례1. 투표소 변경 안내 오류 : 2010년 참의원 선거에 있어서 투표소변경을 알리는 선전물이 일부(300세대)에 해당투표소에 배포해야 하는 것과 다른 투표구의 배포해야 할 것이 맞바뀌어 배포된 사례가 있음(전국 1건)⁶¹⁾.
- 사례2. 투표구 재편에 따른 투표소 통폐합에 따른 의견: 다음은 가고시마현 미나미사츠마시 투표구 재편을 통해 50개의 투표소를 31개로 통폐합 하는 안에 대한 시민 의견 및 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의 내용임.

□ 선거구 재편의 기준

- 1) 하나의 초등학교구역에 1투표구를 기준
- 2) 선거인 수가 70명을 넘고 동시에 투표소까지 대략 3km가 넘는 지구에는 새로운 투표소를 설치
- 3) 2)의 지구라도 다른 초등학교구역까지 3km이내일 경우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투표구를 변경 4) 선거인 수가 약 3천 명을 넘는 투표구에 대해서는 투표구의 재편성, 분할함⁶²⁾
- ▶ 이에 대해 고려자가 많은 투표구에 대해 고려해 줄 것과, 투표소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도 접근성(자가용을 이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
-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규정은 전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운 경우, 기일전 투표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것을 장려⁶³⁾.

59) 후쿠시마현 나미에정 홈페이지

<http://www.town.namie.fukushima.jp/uploaded/attachment/1892.pdf>

60) 토야마현 우오즈시 홈페이지 <http://www.city.uozu.toyama.jp/attach/EDIT/013/013600.pdf>

61) 야스모토 야스히로 「제22회 참의원통상선거에 있어서 관리집행상 문제가 된 사례」, 『선거시보』 60권 3호, 2011, p.11

62) 미나미사츠마시 홈페이지 <http://www.city.minamisatsuma.lg.jp/news/pub-com/2012/post-294.html>

(3) 투표장비 활용 실태

가. 기표대의 활용 실태 및 변천과정

- 기표대는 법령에 정해진 바, 다른 사람이 투표행위를 보거나 투표용지를 교환할 수 없게 설치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으나, 이에 따라 기표대는 양 옆을 볼 수 없게 막아 놓은 것을 사용함.



<그림 2 기표대⁶⁴⁾>

나. 투표함의 활용 실태 및 변천과정

- 투표함은 공직선거법령에 따라 견고한 재질로 이루어 질 것과 자물쇠를 2개 이상 설치할 것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알루미늄 재질로 된 투표함이 많이 쓰임.
- 조립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투표함이 존재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투표 및 선거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교육교재로서 기표대 및 투표함을 대여하기도 함.

63) 미나미 사츠마시 홈 페이지

<http://www.city.minamisatsuma.lg.jp/%E6%8A%95%E7%A5%A8%E5%8C%BA%E5%86%8D%E7%B7%A8%E6%A1%88%E5%9B%9E%E7%AD%94.pdf>

64) 도쿄 내리마구 홈페이지 <http://www.city.nerima.tokyo.jp/kusei/senkyo/keihatsu/sennkyoji/24totijishugi.html>



<그림3 투표함 및 기표대⁶⁵⁾>

○ 투표용지 작성방법

- 일본은 투표에 있어서 선거인이 직접 후보자의 이름이나 정당명을 적는 ‘자서식투표(自書式投票)’를 실시함.

○ 注 意	
一 候補者の氏名は欄内に一人書くこと。	候補者氏名
二 候補者でない者の氏名は書かないこと。	

<그림4 자필식 투표용지의 예⁶⁶⁾>

65) 시즈오카현 히가시이즈정 홈페이지 www.town.higashiizu.shizuoka.jp

66) 치바현 야치요시 홈페이지 <http://www.city.yachiyo.chiba.jp/content/000017884.jpg>

- 선거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의 경우, 각 각 투표 용지와 인쇄된 글씨의 색을 달리하여 투표용지를 제작하기도 함.
- 단 지방공공단체의 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조례에 따라 기 호식 투표의 채택이 가능. 이때에는 투표용지에 인쇄된 후보자 명에 동그라미○를 함⁶⁷⁾.

2. 개표소 운영 실태

(1) 관련 규정

- 개표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도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 하며, 개표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투표소와 유사함.
- 개표장소의 선정은 시청 등의 건물,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곳으로 규정함.

「공직선거법」

(개표구)

제 18조 개표구는 시정촌의 구역에 따른다. 다만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 또는 도도부현의 의회위원의 선거에 있어서 시정촌이 2이상의 선거구에 나누어 졌을 때 또는 제15조 제 6항에 규정에 따른 선거구가 있을 때는 해당 선거구의 구역에 의해 시정촌의 구역을 나누어 여러 개의 개표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15 조 지방자치단체 의회위원의 선거구)

2.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서 전항

67)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senkyo/senkyo_s/naruhodo/naruhodo04.html

단 기일 선거만이 기호식 투표가 가능하며 그 외 기일 전 선거, 부재자투표 등은 기명식으로 진행함

의 규정에 상관없이 시정촌의 구역을 나누어 여러 개의 개표구를 설치 또는 여러 정, 촌의 구역을 합쳐 하나의 개표구를 설치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해 개표구를 설치했을 때는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의위원회는 즉시 고시하지 않으며 안 된다.

(開票区)

第十八条 開票区は、市町村の区域による。ただし、衆議院（小選挙区選出）議員の選挙若しくは都道府県の議会の議員の選挙において市町村が二以上の選挙区に分かれているとき又は第十五条第六項の規定による選挙区があるときは、当該選挙区の区域により市町村の区域を分けて数開票区を設けるものとする。

2 都道府県の選挙管理委員会は、特別の事情があると認めるときに限り、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市町村の区域を分けて数開票区を設け又は数町村の区域を合せて一開票区を設け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規定により開票区を設けたときは、都道府県の選挙管理委員会は、直ちに告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개표관리자)

제 61조 각 선거별로 개표관리자를 둔

(이하 생략)

(開票管理者)

第六十一条 各選挙ごとに、開票管理者を置く。

(이하생략)

(개표입회인)

제62조

(이하 생략)

(開票立会人)

第六十二条

(이하생략)

(개표소의 설치)

제63조 투표소는 시청, 정, 촌의 사무소 또는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開票所の設置)

第六十三条 開票所は、市役所、町村役場又は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の指定した場所に設ける。

(개표의 장소 및 일시의 고시)

제 64조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빠른시일 내에 개표의 장소 및 일시를 고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開票の場所及び日時の告示)

第六十四条 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予め開票の場所及び日時を告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개표일)

제 65조 개표는 투표함이 전부 송치된 날 또는 그 익일에 한다.

(開票日)

第六十五条 開票は、すべての投票箱の送致を受けた日又はその翌日に行う。

(개표)

제 66조 개표관리자는 개표입회인의 입회하에 투표함을 열어 먼저 제50조 제 3항 및 5항에 규정에 의해 투표를 조사, 개표입회인의 의견을 듣고 그 투표를 수리할 지에 대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개표관리자는 개표입회인과 함께 해당 선거에 있어서 각 투표소 및 기일전 투표소의 투표를 개표구별로 섞어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개표의 점검이 끝났을 때는 개표관리인은 즉시 그 결과를 선거장(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분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開票)

第六十六条 開票管理者は、開票立会人立会の上、投票箱を開き、先ず第五十条第三項及び第五項の規定による投票を調査し、開票立会人の意見を聴き、その投票を受理するかどうかを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開票管理者は、開票立会人とともに、当該選挙における各投票所及び期日前投票所の投票を開票区ごとに混同して、投票を点検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投票の点検が終わったときは、開票管理者は、直ちにその結果を選挙長（衆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又は参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については、選挙分会長）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개표장소의 투표효력 결정)

제 67조 투표의 효력은 개표입회인의 의견을 들어 개표관리자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결정에 있어서는 제 68조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그 투표한 선거인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투표를 유효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68조 무효투표에 관한 규정)

(開票の場合の投票の効力の決定)

第六十七条 投票の効力は、開票立会人の意見を聴き、開票管理者が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決定に当つては、第六十八条の規定に反しない限りにおいて、その投票した選挙人の意思が明白であれば、その投票を有効と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개표록의 작성)

제70조 개표관리자는 개표록을 작성, 개표에 관한 순서를 기재하고 개표입회인과 함께 이것에 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開票録の作成)

第七十条 開票管理者は、開票録を作り、開票に関する次第を記載し、開票立会人とともに、これに署名しなければならない。

(개표소의 단속)

제74조 제58조 본문, 제 59조 및 제 60조의 규정은 개표소의 단속에 있어서 준용

함(제58조 본문, 제 59조 및 제 60조는 투표소 단속에 관한 규정)

(開票所の取締り)

第七十四条 第五十八条本文、第五十九条及び第六十条の規定は、開票所の取締りに
ついて準用する。

(2) 개표소 운영

- 투표소와 마찬가지로 공공시설 위주로 선정, 개표 작업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가능한 체육관 등이 주로 이용됨.

(3) 개표시 기계장비, 전산조직 활용여부

- 최근 자동으로 이름을 읽어 분류하는 기계가 도입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작업에 의한 개표를 지속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음.
- 도쿄도의 경우 23구 및 대부분의 시에서는 분류기계를 도입하였으나 후주시의 경우는 기계가 읽어내지 못하는 필체는 결국 사람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함⁶⁸⁾.

(4) 개표부정 의혹제기 사례

- 2010년 참의원 선거 개표 시, 개표관리자 및 개표입회인에게 소형 액정 텔레비전을 제공, 개표 속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한 사례(전국 1건). 이 사건은 투표무효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나 후보자 등에게 개표과정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게 함⁶⁹⁾.

68) 도쿄신문 2014년 2월 5일

<http://www.tokyo-np.co.jp/article/feature/2014tochiji/list/CK2014020502100003.html>

- 개표상의 관리 문제: 23회 참의원 선거시 투표함에 자물쇠가 완전하게 잠겨지지 않은 경우(전국2건), 선거구 선거의 투표함을 열 때 실수로 비례대표선거의 투표함의 열쇠가 배부된 경우(전국1건)⁷⁰⁾.

69) 야스모토 야스히로 「제22회 참의원통상선거에 있어서 관리집행상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서」, 『선거시보』 60권 3호, 2011, p.4

70) 시마사키타카시 「제 23회 참의원통상선거에 있어서 관리집행상의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서」, 『선거시보』 62권 12호, 2013년 p.37.



호 주

호주 연구관 : 김리라

1. 투표소 운영 실태

(1) 투표소 현황

가. 투표소 확보방법

- 호주는 투표소 선정시 선거인이 평등투표, 비밀투표의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함.
 - 투표소는 a) 기차역이 가까운 스포츠시설, 쇼핑센터 등과 같이 교통이 편리하고 거주지역과 가까운 커뮤니티 시설이나 b) 우체국, 지역 학교시설, 교회강당, 센터링크 등 정부지원센터와 같은 공공서비스 건물 등이 활용됨.
- 투표소로 지정되면 안전하고 투명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고 선거캠페인 등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데, 쇼핑센터같은 민간시설의 소유주에게 이러한 조건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⁷¹⁾

71) 호주 총리내각부의 선거과정 주요요소 자료 참고. 17페이지.

http://www.dpmc.gov.au/consultation/elect_reform/strengthening_democracy/docs/strengthening_australias_democracy_11.pdf. 2014년 6월 검색.

나. 투표소 설치 현황

- 2013년에 있었던 연방의회선거(Federal Election)에서는 500여개의 사전투표소를 포함하여 총 9,146개의 투표소가 설치되었음.
- 또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을 방문 중인 선거인을 위해서 세계 102개의 해외공관에 투표소를 설치하였음.⁷²⁾
- 투표소에 나오기 힘든 특수 병원에 있는 사람들과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동식 투표 시설(mobile polling facilities)이 제공됨.
- 2013년에는 38개의 이동식 투표 서비스 팀(mobile voting team)이 400여 곳의 지역을 방문하였음.

다. 투표안내도우미 운영현황

- 질의응답사무원(Inquiry Officers)도 투표소 안에서 선거인을 직접 도울 수 있음.
- 투표용지를 받기 전에 대기하는 줄에 서있는 선거인의 문의사항에 대답해주거나 투표용지에 기입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음.
- 임시보조원(temporary office assistant)이 선거기간 중에 선거콜센터에서 투표안내를 하고 전화와 이메일 문의에 대해 대답을 줌.
- 이들의 근무시간은 보통 공식적인 업무시간과 같으나 선거기간 중에는 저녁이나 주말에도 일이 주어질 수 있음.
- 모집방법과 수당에 대해서는 임시직 투표관리인력 규정을 따름.

72) 2010년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모든 투표소에 21개 언어로 투표하는 방법을 설명한 자료가 배포되었고 2013년에는 그 수가 27개로 늘어났음. 호주선거위원회(AEC)의 2013 연방선거의 주요사실과 수치자료 참고. http://www.aec.gov.au/elections/federal_elections/2013/files/e2013-key-facts.pdf. 2014년 6월 검색.

라. 투표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문제 사례와 대책

- 투표책임원(Office In Charge, 이하 OIC)의 지침서⁷³⁾에 의하면 투표 책임원은 투표대기줄감독관(Queue Controller)과 질의응답사무원(Inquiry Officers)에게 원활한 투표진행을 돕는 역할을 맡김.
- 투표대기줄감독관(Queue Controller)은 선거인이 기표대와 투표용지를 발행하는 테이블을 향하여 한 줄로 서서 기다리도록 지도함.
 - 투표용지를 발행하는 투표사무원이 있는 테이블 앞에는 2-3명의 작은 줄을 만들어 세우고 같은 성을 가진 가족들은 한꺼번에 투표용지를 발행함.
- 질의응답사무원(Inquiry Officers)도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없는 선거인은 선언투표를 하는 다른 줄에 서도록 안내하고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는 투표인에게는 줄 앞쪽으로 서게 하여 투표대기시간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함.

(2) 투표사무원 현황

- 호주선거위원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이하 AEC)에서는 매 연방의회 선거 때마다 70,000여명의 투표사무원을 두고 있으며 해당 업무에 관심있는 사람이 지원서를 작성하면 호주선거위원회(AEC)가 선발함.
 - 투표관리인력 중 임시직에는 임시보조원(Temporary Office Assistant)⁷⁴⁾,

73) 호주선거위원회(AEC)의 투표소 관리 과정 자료 참고..

http://aceproject.org/main/english/samples/po/pox_m012.pdf 2014년 6월 검색.

74) 2013년 연방선거 기간에는 8,000여명의 임시보조원(temporary office assistant)를 선발하여 사전투표 기간 동안에 투표서비스센터에서, 선거일에는 투표소와 투표시간 후 개표하는 일을 도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관련된 질의 응답을 하는 500여명의 선거 콜센터 직원이 배치되고 2013년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550,000번의 전화와 30,000여개의 질의 이메일을 받았음. 호주선거위원회(AEC)의 2013 연방선거의 주요사실과 수치자료 참고.

투표사무원(Polling Office), 특정선거인정보사무원(Voter Information Officer)이 해당됨.⁷⁵⁾

가. 투표구별 선거인수 및 투표소별 투표사무원수

- 호주 전역의 인구 분포가 다양하기 때문에 투표구 지역마다 투표소의 수와 투표사무원수도 큰 차이가 남. 넓은 지역을 아우르는 투표구에서는 선거인수가 6000명이 넘는 반면 외딴 지역이나 시골의 작은 투표구에서는 100명 정도가 선거에 참여함.⁷⁶⁾
- 큰 투표구인 경우 약 16명의 투표사무원이 배치되고, 작은 투표구에서는 투표관리관(OIC) 한 명과 투표용지를 발행하는 투표사무원 한 명으로도 충분하기도 함.

나. 투표사무원 등 투표관리인력 확보방법

- 투표사무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호주선거위원회(AEC)의 온라인 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거나 지원서를 작성하고 직접 거주지역의 투표구 사무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음.

http://www.aec.gov.au/elections/federal_elections/2013/files/e2013-key-facts.pdf. 2014년 6월 검색.

75) 임시 보조원(Temporary Office Assistant)의 a) 1단계(Level One)는 필요시 특정한 업무를 돕는 사람으로, 근무시간과 맡는 업무가 관리자의 재량권에 맡겨지며, b) 2단계(Level Two)는 선거업무 관련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 선발하며, 이들 또한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지지만 전반적으로 투표용지를 검사하거나 투표소 물품 등을 감독하는 업무를 맡게 됨.

투표사무원은 a) 투표일 전부터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투표사무원과 b) 투표날에 투표소에서 일하는 투표사무원으로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음.

애보리진 커뮤니티(Aboriginal Community)나 문화, 언어적 배경이 다른 선거인의 투표를 돕는 특정 선거인정보사무원(Voter Information Officer)이 있음.

76) <http://www.aec.gov.au/employment/temp/working-at-an-election.htm> 호주선거관리위원회(AEC) 홈페이지. 2014년 6월 검색.

- 범죄경력조회를 한 서류를 제출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기준에 대해 숙지하여야 함.
- 「연방선거법 1918(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에 따르면 투표관리에 대한 임시인력인 투표사무원이 호주시민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나 주요한 몇 개의 투표사무원 직렬에는 적법한 투표권자만 지원할 수 있음.
- 호주선거위원회(AEC)에서는 투표관리인력 구성이 다양한 문화와 커뮤니티를 반영하여 선주민(先主民)이 선거 참여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팀(Indigenous and Community Engagement Team)을 구성하여 선주민들에게 투표사무원 지원에 대한 정보와 업무환경을 소개하고 투표관리인력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해당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DRO)에서 투표사무원을 임명을 하면 투표사무원은 ‘채용 제안(Offer of Employment)’, ‘세금(Taxation)’, ‘연금(Superannuation)’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투표구 사무실로 제출해야 함.
- 그 후에 투표사무원은 ‘채용 확인서(Confirmation of Employment)’를 받게 되며 투표일에 투표소에 올 때는 이 서류를 가지고 와야 함.
- 투표사무원과 투표관리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투표사무원임을 증명하는 배지를 착용해야하며 선거일이 끝나면 그 배지는 반납함.

다. 투표사무원의 인적 구성 현황

- 투표책임관(Officer-in-Charge)은 투표소의 전반적인 관리와 선거인의 원활한 투표참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투표소를 설치하고 감독하는 일, 기표용구의 관리, 투표사무원의 감독, 개표와 집계, 투표용지를 정리하여 선거구 사무실(Divisional Office)로 옮기는 일을 맡음.
- 제2책임관(Second-in-Charge)은 더 많은 투표소를 관할하면서 투표와 개표에 관련하여 각 투표소의 투표책임관을 돕는 일을 맡음.
 - 투표소연락사무원(Polling Place Liaison Officer)은 지역구 선거관리 위원회(Divisional Returning Officer)를 대신하여 투표일에 투표소에 나와서 투표책임관에게 조언을 해줌.
- 투표일에 투표소에서 일하는 투표사무원을 살펴보면, 선언투표발행 사무원(Declaration Vote Issuing Officer)이 선언투표⁷⁷⁾를 하는 선거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돕고, 질의응답사무원(Inquiry Officer)은 선거자가 투표대기하는 동안 투표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면 대답해주거나 투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가르쳐 줌.
 - 투표용지발행사무원(Ordinary Vote Issuing Officer)은 선거인단명부에 이름이 있는 대다수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발행함. 위의 세가지 타입의 투표사무원은 모두 선거가 끝난 후에 물품을 정리하고 개표한 투표용지를 집계하는데 투입됨.
- 퀸즈랜드에는 미리 신청한 경우, 선거일에 병원이나 요양원에 투표함과 기표용구를 가지고 와서 침대에 누워있는 선거인들의 투표용지를 받는 선거인방문원(Electoral Visitor)이 있음.⁷⁸⁾

77) 등록된 투표구가 아닌 다른 투표구에서 투표하는 방식

78) 호주 총리내각부 홈페이지의 선거과정 주요요소 자료 참고. 2페이지. <http://www.dpmc.gov.au/consultation/>

- 투표일 전부터 사전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하는 사전투표사무원(Pre-poll Voting Officer)은 미리 가져온 사전투표용지의 수와 선거인명부의 수를 맞춰보고 투표구 사무소에 투표용지를 묶어 전달하는 업무를 맡음.

(3) 투표참여 지원제도

가.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거주자에 대한 투표참여 지원제도

-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편투표(postal vote)를 신청할 수 있음.
 - a) 거주하는 주소지가 투표소에서 20km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b)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요양 중에 투표소에 나오기 어려운 경우, c) 병약한 상황이라 투표소에 나오기 어려운 경우, d) 병약한 사람을 돌봐야하는 경우, e)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f) 종교적인 이유로 투표소에 나오기 어려운 경우, g) 거동이 불편해서 이름을 서명하기 어려운 경우, h) 재외선거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i) 호주 밖의 지역에서 근무 중인 군인, 호주연방경찰의 경우⁷⁹⁾

나.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 대한 투표참여 지원제도

- 투표관리관이 타인의 도움없이 투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elect_reform/strengthening_democracy/docs/strengthening_australias_democracy_11.pdf. 2014년 6월 검색.

79) 위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우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편선거 신청서를 작성하고 프린트하여 직접 서명한 후 호주선거위원회(ACE)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혹은 팩스로 보내면 됨. 우편투표 선거인으로 한번 등록된 자는 다음선거에 재신청하지 않아도 선거 공포 후에 해당 투표용지가 자동적으로 거주지로 발송됨. 2013년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320만명의 유권자가 사전투표 혹은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를 했음. 2010년 선거에서는 250만명 참여. 호주선거위원회(AEC)의 투표소 관리 과정 자료 참고.

http://aceproject.org/main/english/samples/po/pox_m012.pdf 2014년 6월 검색.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투표참여 지원 교육을 받은 투표사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a) 노인, b) 장애인(시각 장애 포함), c) 문맹, d) 문화와 언어적 배경이 다른 경우⁸⁰⁾

○ 투표사무원 외에도 친구, 친척, 투표참관인, 정당원 등 선거 후보자를 제외한 누구에게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선거인을 도와주는 사람은 함께 기표대에 들어가서 기표하고 선거용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음.⁸¹⁾ 이 경우 타인의 위임장(power-of-attorney)을 가진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proxy voting)를 할 수는 없음.

○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이 선언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 봉투에 본인 확인을 위한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사무원의 관리하에 다른 표시로 서명을 대신할 수 있음. 선거인이 한 표시 위에 투표사무원이 ‘그가 표시함(his mark)’이라고 쓰고 표시 좌, 우에 이름과 성을 나누어 대신 쓰고 투표사무원(issuing officer)의 확인 사인을 함.

3. Declaration: I declare that I am entitled to vote, that I have not already voted in this election/referendum, and that the information I have given on this form is complete and correct. I also request that, where applicable, my name and address on the Subdivision Roll be amended to reflect the details given above.

Your signature or mark: **HIS MARK**
JEFF X WILSON

Your personal information on this form may be viewed by authorised staff and scrutineers, and may be provided to Commonwealth agencies and other bodies in accordance with Commonwealth law.

NOTE: Giving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is a serious offence

POLLING OFFICIAL TO COMPLETE - PRE-ISSUE CHECK

B EF054 Address
☐ Permanent
☐ Enrolled

A Voter's Signature
☐

<그림1. 선거인이 서명란에 다른 표시로 서명을 한 경우>

80) 2013년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맹인이거나 시력이 낮아서 볼 수 없는 2832명의 사람들이 호주선거위원회(AEC)의 전화투표 방법(telephone voting solution)을 통해 투표에 참여하였음. 2010년 선거에서 410명이 참여. 호주선거위원회(AEC)의 투표소 관리 과정 자료 참고. http://aceproject.org/main/english/samples/po/pox_m012.pdf 2014년 6월 검색.

81) 투표참관인은 이들이 표를 행사하는 기표대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됨.

다. 농촌지역 투표편의 제도

- 애보리진 커뮤니티(Aboriginal Communiy)나 문화, 언어적 배경이 달라서 투표용지를 작성하는데 어려워하는 선거인을 돕기 위하여 특정선거인정보사무원(Voter Information Officer)을 두고 있음.
- 이들은 다양한 문화를 잘 이해하고 선거인과 소통하는데 필요한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들이 투표함과 기표용구를 가지고 보트와 같은 이동수단을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인력이며, 이들이 그 지역에 가서 외딴지역이동선거(Remote Mobile Polling)나 사전투표(Pre-poll Voting)를 도와 줌.

(4) 선거장비 · 도구 · 용품 실태

가. 기표대 · 투표함 · 기표용구 등 제작 · 운영실태

- 대부분의 선거장비는 재활용이 가능한 골판지로 만들며, 사용한 투표함은 호주선거위원회(AEC)에서 관리함. 2013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쓴 투표함은 50,000여개였고 그 중 14,000여개가 재활용 상자투표함이었음.⁸²⁾
- 「선거법(Electoral Act)」 제206조에 따르면 기표소에서 연필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기표용구에 대한 언급이 있음.
- 투표인이 펜으로 기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호주선거위원회(AEC)에서는 연필 사용을 권장함. 연필이 펜보다 다음 선거까지 오랫동안 보관하기도 쉽고 다른 종이에 묻어나지 않아서 공정한 개표와 선거도구 보관에 더 적합한 기표도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82) 그 당시 사용한 투표용지는 4300만장, 연필 100,000여개, 노끈 약 140킬로미터였음. 호주선거위원회(AEC)의 투표소 관리 과정 자료 참고. http://aceproject.org/main/english/samples/po/pox_m012.pdf 2014년 6월 검색.

나. 기표대 사용실태

- 선거인이 종이 칸막이로 만들어진 기표대(voting screen) 안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투표용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비밀투표를 보장할 수 있음.
-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뒷모습이 다 보이는 개방형 기표대를 사용하며 이는 투표책임관이 기표대 한 칸에 한명씩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그림2. 개방형 기표대를 볼 수 있는 Putney Primary School 투표소>⁸³⁾

다. 투표함 사용 실태

- 종이상자로 만든 투표함은 하얀 투표용지를 넣는 상원의원선거 투표함과 초록색 투표용지를 넣는 하원의원선거 투표함을 구분해 놓음. 그림과 같이 내부가 비치지 않는 투표함을 사용함.

83) <http://www.cyberseraphic.com/category/business-politics/> 2014년 6월 검색



<그림3. 내부가 비치지 않는 종이박스 투표함>

- 투표함을 사용하기 전에 투표참관인이 빈 상태임을 정확히 확인을 한 후에 보안키가 달린 장치로 투표함을 봉인함. 투표관리관은 투표함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보안키의 번호를 저장하고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책임을 짐. 아직 투표가 진행 중인 투표함은 항상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하고 투표용지가 가득 찬 투표함은 봉인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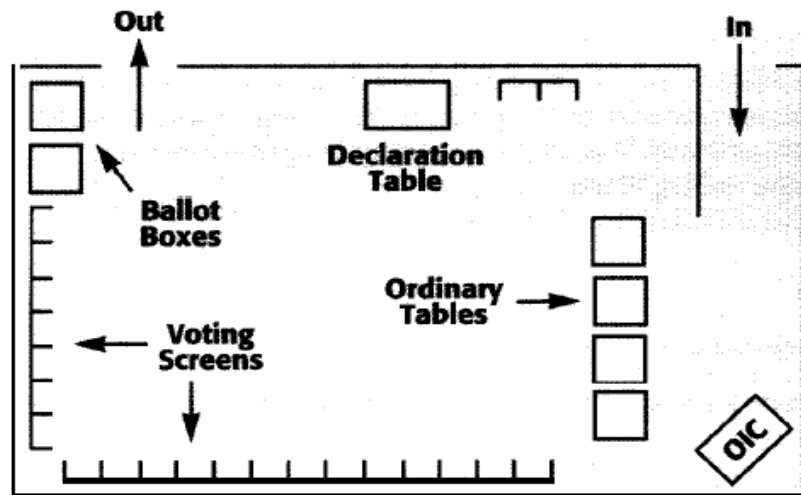


<그림4. 2010년 연방의회선거의 투표함 잠금장치⁸⁴⁾>

84) <http://www.aec.gov.au/media/image-library/files/election-signage/ballot-box-seal.jpg>

라. 투표소별 기표대·투표함 등 배치기준

- 각 투표소의 투표책임관(OIC)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DRO)에서 알려주는 투표소 배치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따라야 함.⁸⁵⁾
- 투표소에 출입할 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을 명확하게 지정해야 하며 선거인이 선거용지를 받는 지점에서 한 줄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함.
 - 선거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투표함(ballot boxes)을 배치하고 투표한 후에 투표소를 빠져 나가기 쉽도록 출구에서 가까운 곳에 둬.
- 기표대(voting screen)와 투표용지를 받는 지점(ordinary table)은 피크 시간대에 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기표대 한 칸에 선거인이 한명씩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표대가 잘 보이는 곳에 투표사무원을 배치시킴.
- 선언투표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책상(declaration table)을 설치하고 이들을 위한 줄을 따로 설 수 있도록 함.



<그림5. 투표소의 배치도 예시>⁸⁶⁾

호주선거위원회(ACE) 홈페이지. 2014년 6월 검색.

85) 호주선거위원회(AEC)의 투표소 관리 과정 자료 참고. 21 페이지.
http://aceproject.org/main/english/samples/po/pox_m012.pdf 2014년 6월 검색.

(5) 투표용지

가. 정당 및 후보자 기재순서

○ 하원의원선거

- 선거관리위원회(DRO)는 하원의원선거 후보자 지명을 받자마자 하원의원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재순서를 결정하기 위한 추첨(draw)을 함.
- 우선 지명신청을 받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후보자에게 숫자를 배정하고, 그 숫자가 적힌 공을 큰 상자에 넣어서 선발된 호주선거위원회(AEC)나 선거관리위원회(DRO)의 사무원이 공을 돌림.
- 상자를 돌리기 전부터 눈을 가리고 있던 다른 사무원이 공을 한 개씩 뽑고 다른 사무원이 나온 숫자를 크게 읽어줌. 추첨에 따라 뽑힌 공에 쓰인 숫자의 차례에 따라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재순서가 됨.

○ 상원의원선거

- 호주선거위원회(AEC)가 상원의원 선거그룹과 그룹에 속하지 않은 후보자 지명을 받자마자 상원의원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재순서를 결정하기 위한 추첨을 두 번 함.
- 그룹의 수와 맞게 공을 큰 상자에 넣고 선발된 호주선거위원회(AEC) 사무원이 공을 돌림. 하원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무원이 눈을 가리고 뽑은 공으로 첫 번째 추첨에 나오는 순서에 따라 각 그룹의 지명받은 순서를 정하고 다시 공을 상자에 넣어 두 번째 추첨을 하여 투표용지의 기재순서를 결정함. 그룹에 속하지 않은 후보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순서를 정함.

86) 호주선거위원회(AEC)의 투표소 관리 과정 자료 참고. 21페이지.
http://aceproject.org/main/english/samples/po/pox_m012.pdf 2014년 6월 검색.

나. 동시선거시 투표용지 작성방법

○ 하원의원선거

- 선거인은 한 투표구를 대표하는 하원의원 한명을 선출함. 하원의원 선거의 투표용지의 색은 초록색이며 후보자 이름 옆에 있는 상자에 선호하는 숫자를 차례대로 기입함.
- 선거인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 이름 옆에 있는 빈칸에 숫자 '1'을 쓰고,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후보자는 '2',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후보자는 '3'으로 모든 후보자에 숫자를 채워 빈 칸을 없게 함.
- 위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작성된 투표용지는 유효하지 않으며 후보자 득표수를 집계할 때 포함되지 않고 따로 보관해 둠.
- 따로 보관하는 경우는
 - a) 투표용지에 후보자 한 명이라도 빈 칸으로 남겨둔 경우, b) 숫자 대신 다른 표시를 하는 경우, c)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누군지 알 수 있게 표시한 경우, d) 중복하여 숫자를 기입한 경우, e) 부정확하게 표시한 경우이거나, f) 공식적인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그림 6. 하원의원선거 투표용지 작성방법 예시>87)

○ 상원의원선거

- 상원의원은 한 주(state) 혹은 한 지역을 대표하며 비례대표로 선호투표를 통해 선출됨. 각 주마다 12명씩 있고 각 지역마다 2명씩 합하여 총 76명의 상원의원이 있으며 각 주의 상원의원은 6년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상원의원은 하원의원의 임기에 맞춰 선거를 치름. 따라서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의 반이 동시선거를 치르게 되며 이 때에는 40개의 상원의원 공석을 두고 다투게 됨.
- 상원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는 흰색이며 투표용지를 좌우로 나누는 굵은 선을 기준으로 두 파트로 나누어 작성함.
- 굵은 선 윗 부분(“above the line”, ATL)에는 선거인이 선호하는 정당이나 그룹에 숫자 ‘1’을 기입하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둠.

<그림 7. 상원의원선거 투표용지의 굵은 선 윗부분 작성방법 예시>⁸⁸⁾

87) http://www.aec.gov.au/Voting/How_to_vote/Voting_HOR.htm 호주선거위원회(ACE) 홈페이지. 2014년 6월 검색.

88) http://www.aec.gov.au/Voting/How_to_vote/Voting_Senate.htm 호주선거위원회(ACE) 홈페이지. 2014년 6월

- 굵은 선 아랫 부분(“below the line”, BTL)의 빈 칸에는 숫자를 다 채워야 함. 제일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숫자 ‘1’을 기입하고, 다음 후보자에게 숫자 ‘2’를 채우는 식으로 하여 투표용지 작성이 끝났을 때에 굵은 선 아랫 부분에는 빈 칸이 없어야 함.
- 굵은 선 윗 부분(“above the line”, ATL)에서 투표자의 선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투표용지에는 그 기호만 있어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지 않은 투표자는 투표용지를 작성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나와 있지 않으며, 선거인이 후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투표사무원에게 호주선거위원회(AEC)가 발간한 책자를 따로 요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임.

YOU MAY VOTE IN ONE OF TWO WAYS

Either:

Above the line
By placing the single figure 1 in one and only one of these boxes to indicate the voting ticket you wish to adopt as your vote

A PARTY B PARTY C PARTY D PARTY E

Or:

Below the line
By placing the numbers 1 to 17 in the order of your preference

A PARTY B PARTY C PARTY D PARTY E Ungrouped

10 SURNAME (Last names only)
14 SURNAME (Last names only)
4 SURNAME (Last names only)

3 SURNAME (Last names only)
7 SURNAME (Last names only)
12 SURNAME (Last names only)
13 SURNAME (Last names only)

15 SURNAME (Last names only)
2 SURNAME (Last names only)
6 SURNAME (Last names only)

9 SURNAME (Last names only)
5 SURNAME (Last names only)
17 SURNAME (Last names only)

16 SURNAME (Last names only)
1 SURNAME (Last names only)

11 SURNAME (Last names only)
8 SURNAME (Last names only)

AEC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SAMPLE

<그림 8. 상원의원 선거 투표용지의 굵은 선 아랫 부분 작성방법 예시>⁸⁹⁾

검색.

89) http://www.aec.gov.au/Voting/How_to_vote/Voting_Senate.htm 호주선거위원회(ACE) 홈페이지. 2014년 6월 검색.

2. 개표소 운영 실태

(1) 개표관리

가. 개표소 운영 현황

- 오후 6시에 투표 시간이 종료하고 나면 투표소를 폐쇄하고 그곳에서 바로 개표를 시작하기 때문에 ‘투표소 개표’라고 할 수 있음.
 - 우선 일반투표사무원과 선언투표사무원(Declaration vote⁹⁰)이 투표용지의 수가 선거인명부에 나온 수와 맞는지 확인한 후에 투표관리관(OIC) 책임 하에 투표용지를 개표함.
- 개표사무원은 수작업으로 접힌 투표용지를 펴서(unfolding) 각 후보자 파일에 투표용지를 분류(sorting)함.
 - 투표용지는 각 후보자 별로 50개씩 모아 한 묶음으로 모음(parceling).
 - 이 때 투표사무원이 옆에 서서 유용한 투표용지인지를 동시에 확인함.
 - 한 투표소의 투표용지의 집계를 마치고 투표사무원의 검토하고 나면 득표수가 결정되고, 마지막으로 투표소에서 발행된 투표용지의 수와 맞는지 다시 확인함.
- 투표관리관(OIC)은 따로 분류한 무효표 결정에 대한 최종권한이 있으며, 선거가 끝난 날 저녁에 투표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하원의원(House of Representatives) 선호투표의 개표결과, 선두 두 명의 후보가 얻은 개표결과, 마지막으로 상원의원(Senate) 개표결과에 대해 세 번 보고함.

90) 선거일에 선거인명부에 따라 선거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방법으로 선거된 투표를 말함. 그 예로 부재자투표, 사전투표, 우편투표(postal vote), 임시투표(provisional vote)가 있음.

- 투표구 사무실에 모인 개표결과는 호주선거위원회(AEC)의 선거관리 시스템과 웹사이트의 VTR⁹¹⁾에 공표됨.
- 아침 8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에 투표소에서의 투표를 마치고 나면 과 투표소에 있던 일반투표사무원과 다른 스태프들이 투표용지의 개표와 집계를 도움.
- 선언투표발행사무원(Declaration Vote Issuing Officer), 질의응답사무원(Inquiry Officer), 투표용지발행사무원(Ordinary Vote Issuing Officer), 또 투표사무원 외에도 투표대기줄감독관(Queue Controller)도 투표용지의 수를 집계함.

(2) 개표장비

- 각 주마다 개표 때 전자장비를 활용하는 정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상원의원선거 개표 때에는 빠른 시간 안에 집계하기 위해 컴퓨터 기기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의 기표내용을 데이터화함.
- 호주 수도 지역(Australia Capital Territory)에서는 2008년부터 지능문자인식(intelligent character recognition, 이하 ICR) 기술을 활용한 투표용지 스캔 시스템을 활용하여 빠른 시간 안에 잠정적인 개표 결과를 알 수 있음. 그 내용을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이 다시 면밀하게 확인하여 최종 개표결과로 결정됨.⁹²⁾

(3) 개표의 공정성 확보방안

- 올바른 방법으로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개표과정에서 따로 집계하며, 후에 투표사무원이 그 효력을 판단하게 됨.

91) VTR(Virtual Tally Room)은 선거 정보와 개표 결과를 제공하는 웹 공간을 말함.

92) 호주 총리내각부 홈페이지의 선거과정 주요요소 자료 참고. 2페이지. http://www.dpmc.gov.au/consultation/elect_reform/strengthening_democracy/docs/strengthening_australias_democracy_11.pdf. 2014년 6월 검색.

- 이 때 판단하는 기준은 법으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투표사무원이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였는가에 대한 이슈가 된 사례가 있었음.
- 2007년 연방의원 선거에서 McEwen 투표구에서 매우 근소한 차이로 노동당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고 재집계를 하였더니 다시 12표 차이로 결과가 바뀌었음.
- 결국 선거소송에서는 그 표 차이가 31표로 더 커졌고 주요 원인으로 투표용지 기표의 효력 판단에 있었음.⁹³⁾

93) 호주 총리내각부 홈페이지의 선거과정 주요요소 자료 참고. 8페이지. http://www.dpmc.gov.au/consultation/elect_reform/strengthening_democracy/docs/strengthening_australias_democracy_11.pdf. 2014년 6월 검색.